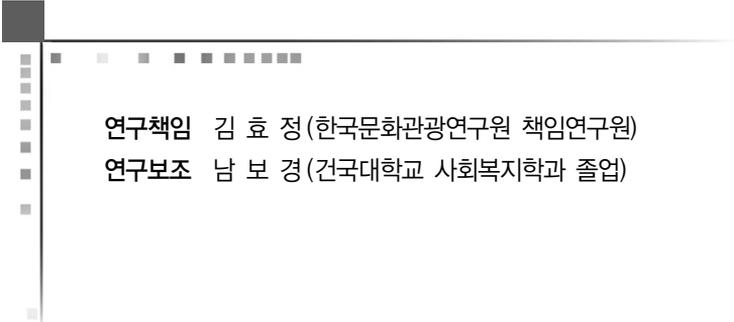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김효정



연구책임 김 효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남 보 경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 문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권과 더불어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적 특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 또한 지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평가의 목적에서부터 실천방안 등을 법적 토대 안에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담당간의 실천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문화기본법 취지에 따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2013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 광 무

연구개요 ● ●



1. 연구개요

가. 연구 배경

- 「문화기본법」의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천적 정책수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국민들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 관련 사업이나 계획에 대하여 문화적 영향을 평가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제 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 시책 등 문화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자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의 제 10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개발)에서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의무화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제 10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에 따른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와 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연구 목적

-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영향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동시에 각종정책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 마련하고자 함
-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문화영향평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2003~2006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영향평가도입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6년 이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문화관련 연구에서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제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관련 법률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화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음
- 기존 문화지표의 구성체계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시설이나 운영 등의 하드웨어 측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측면의 문화도 중요하므로 지역 및 대상에 맞는 문화정책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심층적이고 실전적인 문화지표 개발이 요구됨

3. 수요조사

- 전문가 심층면담조사 및 문화 관련 분야 연구원 및 공무원, 기관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함
-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문화영향평가는 대상이나 평가 항목들이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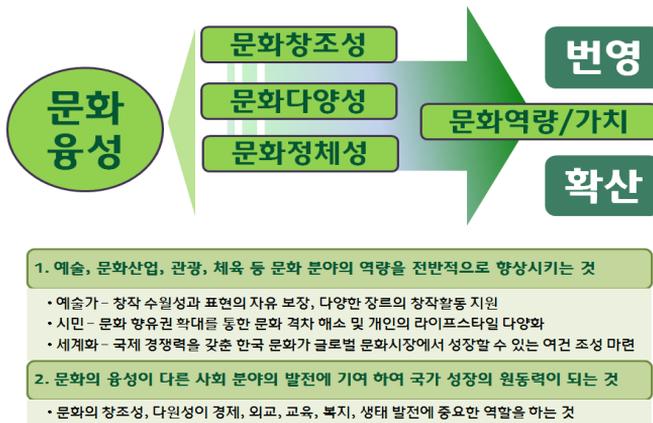
낙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대상 설정 및 평가가 쉽지 않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가 평등하고 다양하게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 및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 내에서 또는 대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정책과 계획 등을 국가 및 민속의 지속성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 정서, 가치관 및 역사관, 시대정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하고 추적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문화영향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영향평가 실행방안

가. 목표

- 개인 및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해소 및 문화기본권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 문화를 통하여 국민행복을 달성하고자 함
- 국민과 국가의 문화적 역량강화 및 가치 확산을 통하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문화융성시대를 전개하고자 함



나. 평가기준 및 지표

1) 기본 원칙

- 국내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흐름을 토대로 국정운영 철학인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을 구체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문화여가분야 이외의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계획 및 정책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됨으로써 일상생활 속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2) 지표성격

- 문화영향평가는 규제적 성격이 아닌 규범적 성격의 평가제도로서 기존의 평가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적이며 정량적인 지표를 배제하고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인 규범적 지표의 성격을 가짐

3) 지표구성

- 국민 일상생활과 국가운영 차원에서 계획과 정책이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 및 집단의 문화정체성 보호를 통해 미래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한국 문화영속과 세계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국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다. 평가주체

1) 문화영향평가위원회

- 문화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2) 위원회 이원화

-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평가는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정책 및 계획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제도화 방안

1) 기본전제

- 현재 「문화기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 될 예정이므로 문화기본법 제5조 4항 및 5항을 근거로 시행근거를 마련함

제 5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이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2) 한계점 및 제언

-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근거법 및 세부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1〉 한계점 및 제언

구분	내용
법적 위상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대상선정에서부터 평가, 후속처리 등 세부시행내용이 필요하나 법에서 5항 4, 5에 정리되어 있어 조항으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결과조치에 대한 사항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 어떻게 국가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필요
평가운영위원회구성 등	‘기본법 제5조5에 평가방법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시행령에서 위원회구성 및 평가대행기관 지정 등을 함에 따라 기본법을 근거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할 심의위원 등과 중복구성 우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2장 관련 평가 및 사례	7
제1절 선행연구	9
제2절 사례분석	15
1. 조사개요	15
2. 국내사례	15
3. 해외사례	27
제3장 수요조사	37
제1절 면담조사	39
1. 조사개요	39
2. 조사결과	39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44
1. 조사개요	44
2. 조사결과	44
제3절 시사점	59
제4장 실행방안	61
제1절 문화영향평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63
제2절 기본방향	68

CONTENTS

제3절 실행방안	72
1. 목표	72
2. 대상 및 범주	73
3. 평가기준 및 지표	76
4. 평가주체	82
5. 평가방법 및 절차	84
6. 평가결과 활용	86
7. 제도화 방안	87
제4절 제도운용방안	92
1. 단계적 추진	92
2. 시범운영	92
3. 제도 홍보/설명	93
참고문헌	94
ABSTRACT	96
부 록	97
1.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지	99
2. 문화기본법 및 관계법	105

표 차례

〈표 2-1〉 시대별 연구추이9

〈표 2-2〉 평가대상 비교12

〈표 2-3〉 평가지표 비교12

〈표 2-4〉 검토대상16

〈표 2-5〉 건강영향평가 대상20

〈표 2-6〉 평가대상25

〈표 2-7〉 평가제도 정리26

〈표 2-8〉 조사대상28

〈표 2-9〉 조사대상31

〈표 2-10〉 조사대상32

〈표 2-11〉 사례종합정리35

〈표 2-12〉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성격36

〈표 2-13〉 지향시점에 따른 평가대상36

〈표 3-1〉 조사개요39

〈표 3-2〉 조사개요44

〈표 3-2〉 문화영향평가 기준(문화기본권보장)55

〈표 3-3〉 문화영향평가 기준(문화정책체성확립)56

〈표 4-1〉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논의67

〈표 4-2〉 국가의 위상과 국민행복차원에서의 핵심가치69

〈표 4-3〉 평가제도의 특성71

〈표 4-4〉 평가대상 선정기준73

〈표 4-5〉 일상생활차원에서 분류75

〈표 4-6〉 국가운영차원에서 분류75

〈표 4-7〉 평가대상76

〈표 4-8〉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계획〉의 분석평가 지표78

〈표 4-9〉 지표범주화에 따른 세부지표 개발80

〈표 4-10〉 평가항목(예)81

〈표 4-11〉 문화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법83

〈표 4-12〉 평가수행방법83

CONTENTS

〈표 4-13〉 문화영향평가 이원적 운영	84
〈표 4-14〉 평가절차	85
〈표 4-15〉 시행령 구성(안)	88
〈표 4-16〉 한계점 및 제언	90
〈표 4-17〉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이원적 운영	92
〈표 4-18〉 시범운영(안)	93
〈표 4-19〉 대상별 제도 홍보 방안	93

그림 차례

[그림 3-1] 응답자 현황45

[그림 3-2] 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45

[그림 3-3]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47

[그림 3-4]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47

[그림 3-5]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48

[그림 3-6] 문화영향평가 시행시기49

[그림 3-7] 문화영향평가 시행 주체50

[그림 3-8] 문화영향평가 우선 고려사항51

[그림 3-9] 가장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 방법52

[그림 3-10]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방법53

[그림 3-11]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 방법54

[그림 4-1] 기본방향68

[그림 4-2] 국가/지역/개인차원에서 제도의 목적과 가치 구현70

[그림 4-3] 문화융성시대 이해72

[그림 4-4] 평가대상 선정기준 설정방향74

[그림 4-6] 지표의 기본구조80

[그림 4-7] 성별영향분석평가절차86

[그림 4-8] 국가문화정책설계과정87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문화기본법」 제1정을 토대로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목표 및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실천적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 문화를 기존의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개념이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국가 사회 전체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및 가치 향상을 도모함
- 「문화기본법」의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천적 정책수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국민들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 관련 사업이나 계획에 대하여 문화적 영향을 평가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제 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 시책 등 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자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대규모 사업 및 정책 시행을 위해 문화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 및 정책 시행 시 광범위하고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진 '문화'의 긍정·부정적인 변화 및 기대효과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임
- 「문화기본법」의 제 10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에서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의무화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제 10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에 따른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와 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연구 목적

-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영향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동시에 각종정책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 마련
 -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 향유와 국가 문화발전 가치로서 문화영향평가 요소를 도출함
- 국가·지자체의 주요 사업·정책 등의 국민 문화환경 및 문화향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문화 친화적 정책 추진 지원
 -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국가·지자체의 주요 사업·정책 등을 시행 시 예측 가능한 환경 및 문화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자

체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반영함

-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실시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창조적 환경 여건 파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시행
 - 문화영향평가가 문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 모색
- 문화영향평가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광범위한 ‘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개개인의 특성 및 생활환경에 최적화된 양질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기존연구 및 국내외 사례조사·분석
 -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기본방향
 - 문화영향평가제도 실행계획 수립

2. 연구 방법

- 문헌자료 및 현황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문화영향평가 배경 및 제도 시행 기대효과
 - 국내외 지역 사례·문헌자료 조사 및 분석
- 국내 정책 수요조사
 - 대상 : 피평가 담당자, 전문가, 평가담당자
 - 내용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시행방향, 기대효과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 관련전문가, 정책관계자 등 자문회의/전문가조사 추진



제2장 ●●

관련 평가 및 사례



제1절

선행연구

1. 선행연구

가. 문화정책연구

- 1970년대부터 사회지표 내 문화지표를 시작으로 문화에 대한 평가체계에 대한 틀이 갖춰지기 시작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종전까지 사용하던 협의적 개념의 문화를 보다 광의적 개념으로서 확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함

〈표 2-1〉 시대별 연구추이

구분	내용
1970년대	- 경제개발 위주에서 삶의 질로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지표가 개발되면서 사회지표 내에 문화지표가 포함됨
1980년대	- 사회지표의 세부 영역에서 문화지표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어 발전하면서 유네스코에 의해 문화지표체계가 만들어짐
1990년대	- 문화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2000년대	- 문화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의 도입이 검토됨 - 문화가 성장을 주도하고 도시의 활력을 창조하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동인이 됨
2007년 이후	- 문화향유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됨 - 국민여가, 삶의 질, 문화권에 대한 인식 확대

나. 문화영향평가연구

- 문화영향평가는 기존의 영향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생겨난 개념이지만 문화와 문화 콘텐츠 등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영향평가들과 개념과 목적, 범위, 방법 등의 차이를 지님

- 기존의 영향평가들은 사회의 물적 인프라 사업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문화영향평가는 비물질적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적 자원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2003년부터 국내 도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음
 -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문화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은 그 대상이 개별적이고 협의적이어서 대상의 중복 및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문화 전반을 포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제도 시행에 앞서 아래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문화영향평가는 2003년 문화영향평가제도연구(문화연구소), 2004년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년 문화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법제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에 걸쳐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및 주체 등은 다음과 같음
 - 정의, 목적, 시행방향 및 시행시기, 평가주체 등에 대해서는 기존연구 모두 비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정의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발전, 즉 국민다수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며 인간의 삶을 둘러싼 제반 문화적 관습과 신념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평가제도
- 목적 : 정치·경제적 사회체계가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국민다수의 문화적 역량의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함
- 시행방향 : 국민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규범적 평가로, 기존의

타 평가제도가 규제적 성격이라면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창조적 요소가 형성·유지되도록 유도 및 지원적 성격을 갖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음

- 수행시기 : 2006년 연구에서는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시하는 4대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와 달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혹은 이후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은 4대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와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음
- 평가주체 : 2003~2006년에 실시된 대부분의 연구가 비슷한 결론으로 도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평가대상을 스크리닝 한 후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음
- 평가대상
 - 2003년 연구
 - 문화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환경과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도시공간과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1차 평가대상 영역으로 설정하고 도시계획, 건축·조경·공공디자인, 공공미술, 문화시설,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으로 재분류함
 - 1차적 대상 영역을 바탕으로 문화발전에 유용한 방향으로 재구조화 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제도, 관습, 패러다임의 정책·법제 영역을 2차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국정목표·원리·과제, 중앙부처별 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 문화관광부 정책 등으로 재분류함
 - 2004년 연구
 - 문화전반의 가치평가 대상은 너무 광범위하므로 가장 적은 범위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개별사업(물리적 사업과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분)과 정책사업(국가 및 지자체 사업으로 구분)으로 재분류
 - 2006년 연구
 - 기존 평가에서 다루어지던 협의적 대상의 영역에서 대 범위(도시, 정부

정책 및 법제, 국정 과제 등)의 영역 및 사회적 시스템 등의 운영 원칙으로 대상을 보다 넓게 설정하고 기존의 규제 위주의 평가가 아닌 권고적 성격의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표 2-2〉 평가대상 비교

구분	평가대상		대상분류
03 연구	1차	도시공간 및 문화환경 영역	도시계획, 건축/조경/공공디자인, 공공미술, 문화시설,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2차	국정과제 및 부처별 정책 법제영역	국정목표/원리/과제, 중앙부처별 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 문화관광부 정책
04 연구	국가정책		물리적인 개별사업 및 프로그램 사업 포함
	지역정책		국가정책, 지역정책
06 연구	국가차원		정책/제도 도입, 비법정계획인 중장기종합비전 및 계획, 분야별 중장기계획, 연도별 주요 종합시책 등과 법적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자치단체/산하기관		사업계획

- 평가지표 : 2003년의 연구는 국가와 생활차원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2004년의 경우 보다 본질적인 문화에 대한 접근으로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권리’라는 큰 항목 속에서 세부지표를 도출하였고 2006년의 연구는 정책목표를 문화발전에 두고 문화발전의 필요 요소로서 창조, 계승, 관용, 형평, 신뢰 등 5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있음

〈표 2-3〉 평가지표 비교

구분	내용	평가항목
2003년	국가와 생활차원의 평가지표 도출	문화적 역량, 문화민주주의, 문화복지, 공동체형성, 생태학, 문화적 생산과 전문성
2004년	문화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통한 평가지표 도출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권리
2006년	문화발전을 위한 평가지표 도출	창조, 계승, 관용, 형평, 신뢰

- 기대효과 :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사업에 따르는 문화적 가치 상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참여정치를 통한 문화가치 실현을 통해 문화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계기를 마련함
- 2003~2006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영향평가도입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문화영향평가 물리적 대상(정책/무엇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할 것인가)과 문화영향(무엇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고 문화의 속성상 다양한 영역이 존재)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제도가 법제화되고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2006년 이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문화관련 연구에서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제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관련 법률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화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음

다. 시사점

- 문화영향평가 지표 구성 시 정책의 목표를 고려하여 정책 수행 과정 평가를 위해 생산해야 할 통계의 방향과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평가하고자 하는 문화의 범위에 따라 지표의 구성체계가 달라지므로 각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 된 지표를 구성해야 함
- 기존의 문화지표는 정량적 지표 위주의 문화를 주로 평가하고 있으나 문화에 대한 평가는 영향 및 질적 평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성적 부분을 포함한 지표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기존 문화지표의 구성 체계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시설이나 운영 등의 하드웨어 측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측면의 문화도

중요하므로 지역 및 대상에 맞는 문화정책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심층적이고 실전적인 문화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 중앙 주도의 문화지표는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방별 특색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지역문화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문화평가를 통한 지역 관점의 문화적 성과를 증대시켜야 함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로는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등이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표본조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역적 특성 또한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함
- 이에 각 지방별 특색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지역문화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문화평가를 통해 지역 관점의 문화적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일괄적인 지표 적용이 아닌 지역적 특성 및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포괄적 지표를 마련해야 함
- 현재의 문화지표는 다른 통계자료들과의 분류체계가 달라 지표간의 연계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영역들과 문화영역 간의 비교·파악이 용이하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
-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실시할 경우, 환경 측면의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제2절

사례분석

1. 조사개요

- 영향평가란 지속가능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영향평가 대상인 정책 및 사업 계획수립 시 그 정책시행 이후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영향평가는 사전에 미리 관련 분야의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합리적·효율적·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성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
- 특히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문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후적 처리방식에서 탈피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사전 예방위주로 해결해야 함¹⁾
- 사례조사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국내는 규제형 영향평가제도와 규범형 평가제도, 해외는 대규모사업, 도시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와 도시문화지표 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함

2. 국내사례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영향평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례를 조사·분석함

1)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24(2), 2013.8

〈표 2-4〉 검토대상

평가구분		대상	주체
규제형	4대 영향평가	주로 하드웨어적 국토개발 사업	주관 : 환경부, 건설교통부, 안전행정부
	건강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대규모 사업	주관 : 환경부
규범형	성별 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포함)	주관 : 여성가족부
	고용영향 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석/평가요청 하는 정책 또는 정책심의회에서 분석/평가하기로 심의한 정책	주관 :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신규 구축사업 및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	주관 : 안전행정부

가. 규제적 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 정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및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을 할 때 정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 및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대상

- 총 17개 분야 7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 사업들은 대부분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임

○ 목적

- 개발사업의 시행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 환경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계획 함
- 각종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오염을 사전에 차단·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함

○ 기능

-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 예방적 및 환경관리 기능 : 사업자에게 개발 입지와 그와 관련된 자연자원, 사회적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의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의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 유도함
- 주민들의 의견 이해 조정 기능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보장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정 및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함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기능 :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택하는데 도움을 줌

○ 특징

- 다른 영향평가의 기본이 되는 영향평가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국토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평가제도이며, 4대영향평가 중 가장 먼저 시행되었음
- 2003년 스코핑 제도²⁾ 도입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며, 이를 통해 평가 부담의 경감 및 평가의 투명성 확보 등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노력을 함

2) 인구영향평가

○ 정의

- 수도권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향평가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수도권 내의

2) 스코핑(scoping) 제도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앞서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임

과도한 인구집중 및 증가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함³⁾

- 대상 :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3개 분야, 13개 사업
- 시행시기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에 실시함
- 목적
 - 인구가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염두하고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모든 도시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인구집중을 방지하고자 함
 - 수도권 지역적인 인구집중 또는 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를 완화 및 해소하고자 함

3) 교통영향평가

- 정의
 -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교통사업의 시행 및 시설 설치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교통장애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 및 효과를 사전에 검토·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임
- 대상
 - 도시개발 등 11개 분야, 택지개발 사업 24종 및 공동주택 등의 23종 시설을 대상으로 함
- 목적
 - 평가대상 사업 및 시설의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 및 분석하고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해당 사업지 및 시설물 내의 교통흐름과

3) 인구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2000.

지역의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함

4) 재해영향평가

- 정의
 - 개발계획이 수립·입안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가 지역의 치수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수해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
을 개발 전 상태 이내로 통제하는 방향으로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⁴⁾임
- 시행시기 : 개발행위 시(공사 시작 직전)
- 대상 : 도시개발 등의 6개 분야의 택지개발사업 등 21종 사업
- 목적
 - 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 재해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마
련하고자 함
- 특징
 - 재해영향평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로 일원화 되면서 2008년
12월부로 폐지 된 평가제도임

5) 건강영향평가

- 개요
 -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
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이라고 정의⁵⁾할 수 있으
며,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영향을 평가 할 수 있
도록 함
 -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건강에 미칠 영향이

4) 재해영향평가제도운영결과, 한국수자원학회지, 유창열, 2008.

5) 건강영향평가 정보시스템(<http://hia.me.go.kr>)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 동시에 평가 받도록 함

- 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대규모 사업, 총 3개 분야 6개 사업이 해당됨

〈표 2-5〉 건강영향평가 대상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 개발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3.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3) 중간처리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별표1

○ 목적

- 의사결정자들이 건강과 특정 제안 및 계획 등이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 등과의 관련성을 인지하게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를 항상 고려하도록 함
- 향후 발생 가능한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를 사정 및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움

- 정책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그 정책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자들이 제안 및 계획 등에 대한 의사결정시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

○ 기능⁶⁾

- 환경전문가, 건강전문가, 사업자, 지역주민, 승인기관, 기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공중참여를 용이하게 함
-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건강영향과 건강불평등을 확인함
-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며, 기관들 사이의 협력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함
- 취약집단의 건강상태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여함

○ 특징

- 2010~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평가였으나 2013년 「환경보건법」 개정⁷⁾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규제적 성격의 영향평가제도로 분류할 수 있음
-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함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강영향평가 정보시스템(<http://hia.me.go.kr>)

7) 환경보건법(2013.1.1 일부개정): 건강영향평가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운동을 위해 개정함

6) 규제형 영향평가 특징

- 규제형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 인한 절차의 중복 및 비용의 과다 지출 등의 문제로 인한 부담이 있음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2001년에 제정하여 동일한 사업이 두 가지 분야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하나의 통합영향평가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절차를 통합하여 절차의 중복 및 비용의 과다지출을 줄이고자 시도함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는 평가제도간 상호 중복문제 등으로 2009년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전환되었고,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운영 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변경 및 대체되었으며, 인구영향평가는 폐기되었음
- 규제형 영향평가는 평가 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제도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큼
 - 정책이나 계획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 계량적 지표를 통하여 사업전후의 결과를 비교하여 영향도를 측정하는 형태의 평가방법을 사용함

다. 규범적 영향평가

1) 성별영향분석평가

- 정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임

- 시행시기 : 정책 실시 전부터 정책 집행단계까지 실시함
-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의 실현,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의 확립,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함⁸⁾
- 대상
 - 46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용기관으로 지정(2007년), 시도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개 기관 중 1개 기관 의무 적용기관 대상이며 그 외에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참여 가능함
- 현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 개선방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적 성격의 제도라기보다는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적 성격이 강함
- 특징
 - 시행 첫 해에 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에 두 번째 해부터 제도화하였음
 - 각 평가는 담당부처의 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단위에서 지방청으로 업무가 이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법률·계획·사업으로 평가대상을 구분하여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2) 고용영향평가

- 정의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정책·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8)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실행 매뉴얼 개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주혜진, 2013.08

을 분석·평가하여 고용 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

- 시행시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평가는 정책의 사전·중간·사후평가 가능하며, 정책심의회는 선정평가는 정책의 중간·사후평가만 가능함
- 목적 및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⁹⁾에 의거하여 소관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함으로써 더 좋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함
- 대상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첫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석·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둘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분석·평가하기로 심의한 정책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넷째,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책
- 특징
 - 정책 고유의 목표와 연계하여 I-O모형(단기분석), 일반균형모형(중기분석), 회귀분석모형 등 다양한 정량적 방법을 활용한 일자리증감 분석을 통하여 정책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 등 산출
 -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결과는 공개하고, 평가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9) 2014.1.21 「고용정책기본법」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현재 시행령 준비 중)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하거나 권고 가능함

3)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요

-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신규 수집·이용·연계 및 취급 절차상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를 활용하여 판단함

○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

○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권장함

〈표 2-6〉 평가대상

기준	내용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고려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하는 개인정보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채할 가능성 및 그 위험정도

○ 절차

- 개인정보의 흐름을 분석·도식화하여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찾은 뒤, 도출된 위험을 그 크기에 따라 수치화된 위험도를 표기하여 위험도의 크

기가 높은 순으로 보안대책을 마련함

- 이러한 절차의 특징은 정보시스템 스스로에 대한 위험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

라. 종합

○ 기존 평가제도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7〉 평가제도 정리

구분	목적	대상	주요내용	심의기관	도입시기
환경영향평가	자연, 생활, 사회, 경제 환경영향 예측 및 대책 강구	17개 분야 63개 사업	- 자연환경 - 생활환경 - 사회·경제 환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81년
교통영향평가	교통상 장애 등 문제 예측 및 대책 강구	11개 분야 24개 사업 23개 시설	- 교통시설 및 교통 소통현황 - 사업지 주변지역 교통수요 - 교통장애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통영향 심의위원회	1987년
인구영향평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대책 강구	3개 분야 13개 사업	- 인구변화예측 - 기반시설 공급방안 - 인구유입억제방안	수도권 정비위원회	1984년-2008
재해영향평가	홍수 등 재해상 문제점 예측 및 대책 강구	6개 분야 25개 사업	-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저감대책	재해영향 심의위원회	1996-2008
건강영향평가	대규모 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방/조치	환경영향평가대상 총 8개 분야 14개(산업단지, 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 건강영향예측 - 저감방안 - 사후환경영향조사 - 불가피한 건강영향	환경부	2010
성별영향평가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실현	중앙행정기관 46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별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개	- 성별영향 발생가능성 - 성별요구도 - 성별형평성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여성가족부 평가정책관	2002년

구분	목적	대상	주요내용	심의기관	도입시기
고용영 향평가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지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책	- 고용의 양과 질 - 일자리 증감	고용노동부 정책심의회	2010년
개인 정보 영향 평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	개인정보파일 5만, 50만, 100만명 으로 구분	- 개인정보침해가능성 -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일별 조치여부	평가지정기관	2013년

3. 해외사례

가. 분석기준

- 조사는 문화영향평가제도와 환경영향평가 내의 문화영역 평가, 도시지표 · 도시평가시스템 내의 문화수준 평가사례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함
- 문화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통한 문화 평가
 - 타 영향평가제도와 같이 개발 사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둠
- 환경영향평가 내의 문화영역평가
 - 환경 혹은 사회의 범주 안에서 문화영역을 다루는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평가의 목적은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하지만 평가 내용은 문화영향평가보다 제한적인 영역을 다루나 독자적인 문화영향평가가 아닌 기존의 영향평가제도안에서의 문화 영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문화 영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역사 · 문화적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도시지표 · 도시평가 시스템 내의 문화수준평가
 - 지속가능한 도시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문화를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음¹⁰⁾

- 세계의 대도시들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도시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시스템 내에는 도시 단위로 측정 가능한 문화와 관련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음
- 문화도시 또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에서 사용하는 평가시스템으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문화가치 확산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평가유형은 위의 두 유형처럼 문화적 권리 침해방지 및 문화적 가치 보호 목적 이상으로 내재되어 있는 도시의 문화성을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전반적인 도시문화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나. 사례

1) 문화영향평가

○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음

〈표 2-8〉 조사대상

평가명	평가내용 및 방법
뉴질랜드 클러타지구 폐수처리장 문화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처리장 설치 관련 계획 및 법규(자원관리법, 해안지역계획, 자연자원관리계획, 하천 및 민물관리 등)에 대한 내용 평가 - 각종 문헌조사(간행물, 논문, 신문기사, 서적, 법규 등), 원주민들과의 직접면담, 현장조사(수량 및 수질조사) 등의 방법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성적 평가 방법을 통한 서술 형식으로 구성
뉴욕 옐로스톤카운티 문화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문화적 자산 및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조사·분석을 통하여 예술, 문화, 역사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시 우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과제 선정을 위해 만족도 조사 형식의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¹¹⁾과의 인터뷰,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평가함

10) 해외사례로 본 문화영향평가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정숙영, 서울, 2006.02

11) 어떤 특정 주제나 쟁점을 두고 그 쟁점의 시험을 위한 표본집단이 된 사람들(통상 5~10인)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과정. 이용자의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는 토론회임

(1) 뉴질랜드 : 클러타지구 폐수처리장 문화영향평가

○ 목적

- 클루타 지방의 폐수방출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영향과 카이타후(Kai Tahu)의 정신과 문화와 관련된 연관성의 개략을 구성하고 폐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폐수 배출이 지역에 미치는 정신적·문화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각종 환경 및 문화적 영향이 예상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지역의 정체성과 부족민들의 고유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여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함

○ 평가내용

- 지역의 역사적·지리적 여건, 전통문화, 문화재, 풍속, 생태환경 등에 지역공동체와 생활문화, 정신적 가치, 자연에 대한 그들의 문화적 관점 등에 대한 논의 포함
- 폐수처리장 설치 관련 계획 및 법규(자원관리법, 해안지역계획, 자연자원관리 계획, 하천 및 민물관리 등)에 대한 내용

○ 평가방법

- 각종 문헌조사(간행물, 논문, 신문기사, 서적, 법규 등), 원주민들과의 직접면담, 현장조사(수량 및 수질조사) 등의 방법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성적 평가 방법을 통한 서술 형식으로 구성

○ 평가결과

-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 클러타 지역 부족들은 그 지역의 수로(水路)가 중요한 문화적·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음
- 지역의 수로는 자연적 흐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적당한 활용 및 폐기 용도로의 사용은 신성 침해와 부족 소멸 등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며 예로부터 전해오던 초자연적인 힘마저 잃을 수 있다고 믿음
- 이로 인해 폐수 방출은 클러타 지역의 문화적·전통적 가치에 매우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설치 시 지역주민의 특수한 의식세계를 고려하여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수로로의 폐수 방출은 제고되어야 함

(2) 미국 : 뉴욕 오렌지카운티 문화영향평가

○ 목적

- 도시의 문화적 자산 및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조사·분석을 통하여 예술, 문화, 역사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우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
- 뉴욕시 차원의 문화정책도 있으나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방법

-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과제 선정을 위해 만족도 조사 형식의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¹²⁾과의 인터뷰, 공청회 등을 활용함
- 설문조사는 약 2개월간 지역 문화계 인사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렌지카운티재단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신문기사, 라디오방송, 이메일 서비스 등의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함
- 포커스그룹(12명)과 인터뷰(10명),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및 논의 과정을 거침
-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약 45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150명 이상의 시민이 토론과정에 참여함

○ 활용방안

- 철저하게 지역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예술, 문화, 역사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됨
- 이 평가에서 활용된 질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문화지표로 활용되며, 필요에 따라 문항의 범위를 광역적 혹은 국지적인 범위로 조성하여 다양하게 응용 가능함

12) 어떤 특정 주제나 쟁점을 두고 그 쟁점의 시험을 위한 표본집단이 된 사람들(통상 5~10인)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과정. 이용자의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는 토론회임

2) 환경영향평가 내의 문화영역평가

-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음

〈표 2-9〉 조사대상

평가명	평가내용 및 방법
홍콩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의 문화유산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사업 진행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함 - 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를 위한 대책을 사업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실시함

(1) 홍콩 :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의 문화유산 영향평가

- 목적

- 홍콩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평가의 이해를 촉진하고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개발 사업이 문화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안에 제시하고 있는 평가요소 중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가이드스를 제시하여 보다 강력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음
-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문화유산과 관련된 것에서는 평가의 각 단계마다 전문가들의 적절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 의의

- 환경영향평가 내에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평가 지침을 독립적으로 마련하여 기존 제도와의 충돌 없이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함
-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환경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토하여 개발에 따른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음

○ 시사점

-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들은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되기는 하나 문화는 문화유산 이상의 범위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도시지표 · 도시평가시스템 내의 문화수준평가

○ 도시지표 및 도시평가시스템 내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사례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표 2-10〉 조사대상

평가명	평가내용 및 방법
뉴욕 지속가능한 도시지표	- 시민들에게 문화적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장기 문화 관련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 도시지표 내의 문화지표는 정량적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호주 로간(Logan)의 문화계획지도	- 문화관련 지표를 통한 조사 결과를 데이터화 하여 문화정책에 반영하여 미래 사회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 문화지도는 크게 문화적 자산, 문화관련 단체, 활동과 이벤트, 정체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됨

(1) 미국 : 뉴욕 지속가능한 도시지표

○ 목적

- 도시평가시스템 안에 문화를 포함시켜 시민들d 문화적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며 도시의 성장관리 측면에서의 문화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

용하기 위함

- 뉴욕시는 'Social Indicator'라는 이름의 도시지표체계를 통해 매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도시지표체계 안에 문화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표를 통해 마찬가지로 매년 도시 전반의 문화 수준을 평가함

○ 평가지표

- 뉴욕시의 도시지표 중 문화 부문의 지표는 도시방문객 수, 문화이벤트, 티켓 판매 수 등이 제시됨
- 공간적 범위는 도시 및 자치구 단위로 한정하여 평가하며,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본방향의 성격이 강함
- 뉴욕시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에서 상위지표에 따른 문화 관련 세부지표 평가와 제반 활동을 주관함
- 문화 관련 세부 지표내용은 건축, 공원, 공연, 미술, 예술가, 유물, 유적, 지역의 문학, 동물원, 영화, 인종별 문화 분포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됨

○ 한계점

- 도시지표 안에 포함된 문화지표들은 실질적으로 도시의 문화정책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기는 하나 대부분 휴식문화, 역사문화, 예술문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도시 전반의 문화 수준 향상에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호주 : 로간(Logan)의 문화계획지도

○ 목적

- 문화관련 각 세부 분야의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문화정책에 반영하고자 문화지도를 작성함
- 문화지도는 현재의 문화시설, 활동,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됨
- 문화지도는 세부지표 자체보다 시 차원에서의 정책 지향점을 제시함

로써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각 시설 또는 커뮤니티 간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요내용

- 문화지도의 분야는 크게 문화적 자산, 문화관련 단체, 활동과 이벤트, 정체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됨
- 문화 인프라는 위락시설, 아트갤러리, 시립도서관, 별장, 지역주민센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 간 연계를 중요시 함
- 문화 활동에 기초를 두고 있는 커뮤니티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정보와 요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커뮤니티에 맞는 장소마케팅을 구상함

○ 활용 및 기대효과

- 문화 발전은 점차 도시정책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 문화지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및 대학과의 파트너 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
- 경제와 산업발전, 환경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 운영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함
-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화정책 수립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커뮤니티 강화, 라이프스타일과 건강한 삶 증진 등에 필요한 종합적 접근을 기대함

다. 종합

- 개발사업과 문화정책 사업으로 평가대상을 구분하여 조사한 문화영향평가 관련 해외 사례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조사결과, 개발사업과 관련된 평가는 가이던스 제시보다는 강력한 기준에 의한 평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민과 도시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지표개발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평가목적 및 평가 대상에 따라 평가방법 · 평가기준 등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1〉 사례종합정리

유형	국가	평가사례	대상	문화범주	방법
문화영향평가	뉴질랜드	클러타 지구 폐수배출 문화영향평가	개발사업	역시 지리 생태환경	역사적, 지리적 여건, 문화 및 생태 환경 조사(각종 문헌조사, 직접면담, 현장조사(수량 및 수질조사))
	미국	뉴욕 오렌지카운티 문화영향평가	문화정책	시민의 문화적 삶 확보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요구 조사(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공개토론회 방식)
제도 내 영향평가	홍콩	홍콩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문화유산 영향평가	개발사업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평가지침 별도 마련(강력한 기준에 의해 평가 관리)
도시시스템	미국	뉴욕 지속가능한 도시지표	문화정책	도시문화 수준	도시방문객수, 문화이벤트, 티켓 판매수 등 제시 - 건축, 공연, 미술, 예술가, 유물, 유적, 지역의 문학, 동물원, 영화, 인종별 문화분포 등 구성
	호주	로간 문화계획지도	문화정책	문화환경 계획	문화적 자산, 문화관련 단체, 활동과 이벤트, 정체성 등 4개 분야로 구성(정보/통계조사)

4. 시사점

- 국내 및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평가대상에 따라 평가의 성격 및 방법과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성격 및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평가의 대상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기본법 제5조 4항에 제시된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 2-12〉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성격

구분	평가성격	비고
개발사업	규제형	보호 등을 위한 제어기준 제시
정책 및 계획	규범형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또한 평가대상은 평가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을 실현하고자하는 시점이 현재 또는 미래에 있는가에 따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화영향평가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평가의 지향시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표 2-13〉 지향시점에 따른 평가대상

지향시점	평가성격	비고
현재	개발사업	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현재의 모습을 유지/보존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함
미래	정책 및 계획	현재의 상황을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미래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가 지향할 바를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제3장 ●●

수요조사



제1절

면담조사

1. 조사개요

-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성격 및 대상,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심층면담조사를 진행함

〈표 3-1〉 조사개요

구분	내용
대상	건축, 조경, 시공, 사회, 관광, 역사, 언론 등 전문가 등 7인
기간	2013. 10 - 12월
방법	개별 면담
내용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평가의 성격 및 대상, 기준 등

2. 조사결과

1) 평가의 목적

- 문화기본법 통과와 더불어 문화영향평가가 지향할 바에 대하여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할 만큼 문화에 대한 수요가 각계분야에서 커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운영철학을 보여주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함
 - 국가운영철학과 연계하여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정책 및 사업 등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특히 대규모 예를 들어 4대강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의 경우 경제 또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이나 뉴타운조성 사업, 고속도로 등과 같은 기반시설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 목적 이외에 원주민, 공동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영향 평가의 필요성이자 목적이 될 수 있음

2) 평가의 성격

- 문화영향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제도가 가지는 규제적 성격 보다는 문화의 선 가치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규범적 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국가 및 시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편견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면 규범적 성격이 더욱 적합할 듯함
 - 그러나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올림픽,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엑스포, 박람회, 영화제 등과 같이 국가와 국민 전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와 별도로 지역사회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어 문화정체성이나 문화다양성 등에 미치는 부정 또는 긍정 효과를 평가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3) 평가의 대상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던 국민문화생활과 국가문화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 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여 평가를 할 경우 그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여 평가자체의 방향성을 잃을 우려가 있음

- 한 예로 국민 여가생활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TV는 국민의 문화생활과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며, 또한 청소년 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이돌이라 할 수 있지만 문화영향평가에서 TV프로그램이나 영화, 아이돌 문화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이를 포괄하는 대중문화정책이나 문화산업진흥 정책, 영화진흥계획 등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정책이 청소년과 국민정서, 국민문화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이 제도와 성격이 맞음
-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식주, 여가생활 등과 관련 있는 분야로 구분하고 여기에 관련된 계획을 물리적 또는 프로그램 측면에서 평가기준을 세워 평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대상은 평가위원회 등에서 매년 평가영역을 먼저 선정하고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추천 또는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 가능함

4) 평가의 기준

- 문화영향평가가 기본적으로 규범적 제도를 지향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의 평가제도나 문화지표들이 갖고 있는 성과 또는 현황을 판단하는 형태의 평가기준 제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문화지표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시설의 개수, 프로그램 수, 사용자수, 만족도 등과 같은 정량 지표는 앞으로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향후 설정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기는 하나 그 정책과 계획이 문화생활을 향유함에 있어 어떤 기능을 하고,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평가기준은 평가목표 즉 문화영향평가를 통하여 국가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바라는 지향점을 기준으로 그것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실현함에 있어 이 제도와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여기서 국가가 지향하는 문화에 대한 가치관은 국가와 국민차원에서 고려 가능하며, 국가차원에서는 글로벌시대에 지구인으로 살 것인가 한국

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국민차원에서는 차별과 편견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는 문화기본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생각됨

- 만약 이러한 가치관을 문화영향평가의 최대목표로 설정한다면 문화정체성을 훼손 또는 진흥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 지역과 단체, 개인의 배경에 의해 소외되거나 차별받고 있지는 않는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지는 않는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에 서부터 출발하여 세부평가지표 등을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임

5) 평가의 시기

- 문화영향평가는 기존의 평가제를 보더라도 사전 또는 사후 평가 모두 가능하지만 문화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사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문화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정책 및 계획 이전에 평가를 시행한다면 정책 시행단계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유도하여 사전에 검토된 내용이 시행단계를 거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문화영향의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갖추어지면 좋을 듯함
 - 사후평가는 정책의 결과로 얻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함
 - 「문화기본법」을 토대로 평가제도가 시행된다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것으로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어렵다 판단될 경우 모니터링이나 정책사후 평가제를 병행하거나 지역문화지표, 여가지수 등 다른 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평가의 주체

- 문화영향평가는 관련법에 근거를 둔 별도의 평가기구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평가제도의 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부처차원이나 기관차원보다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시범단계에서는 문화융성위원회 등에서 진행하고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 아울러 평가대상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계획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다양한 부처의 사업에 대해 시행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총괄하되 평가 대상 정책 및 계획별로 관련 부처에서 주관 하에 관련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할 있도록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7) 기타고려사항

- 문화영향평가는 일부 관계자들만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에게 아직은 생소한 평가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평가의 의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의 홍보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평가제도가 사업지연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읽혀질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문화영향평가의 본연의 취지를 곡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는 문화관련 분야 연구원 및 공무원, 관련 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함
- 조사내용은 기존의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토대로 문화영향평가 필요성 및 평가기준 등 문화영향평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함

〈표 3-2〉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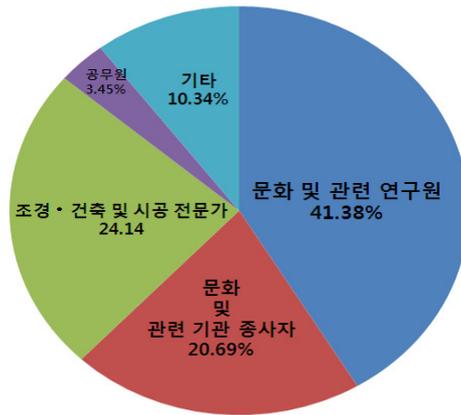
구분	내용
대상	문화 관련 분야 연구원 및 공무원, 기관 대표 및 실무자
방법	인터넷 설문조사(Survey Monkey), 이메일 및 직접 설문조사
기간	2013. 12.1 - 12. 10(10일)
내용 (총 13문항)	응답자 현황, 문화의 최고가치, 평가의 필요성 및 대상, 시행시기 및 기준, 시행주체 등

2. 조사결과

1) 응답자특성

- 전체 응답자는 35명임
 - 응답자 비율은 문화 및 관련 연구원이 41.38%, 문화 및 관련기관 종사자 20.69%, 조경·건축 및 시공 전문가 24.14%, 공무원 3.45%, 기타¹³⁾ 10.3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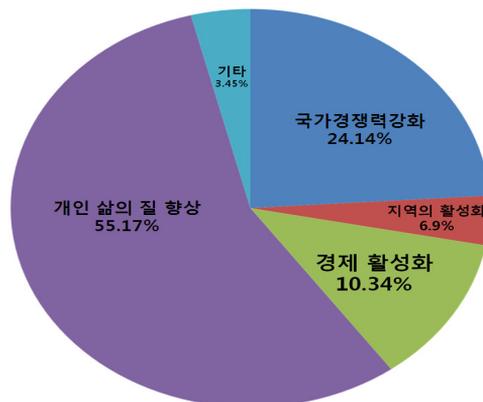
13) 기타 :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중 응답자 현황에 응답하지 않은 전문가



[그림 3-1] 응답자 현황

2) 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

- 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묻는 질문은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의 활성화, 경제 활성화, 개인 삶의 질 향상, 기타로 이루어짐
- 전체 응답 중 개인 삶의 질 향상(55.1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국가경쟁력 강화(24.14%)가 그 뒤를 이었음
 - 그 외에 경제 활성화(10.34%), 지역 활성화(6.9%), 기타(3.45%)로는 지역 및 경제 활성화와 개인 삶의 질 향상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림 3-2] 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 이는 전문가 조사¹⁴⁾에 나타난 문화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와 순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문화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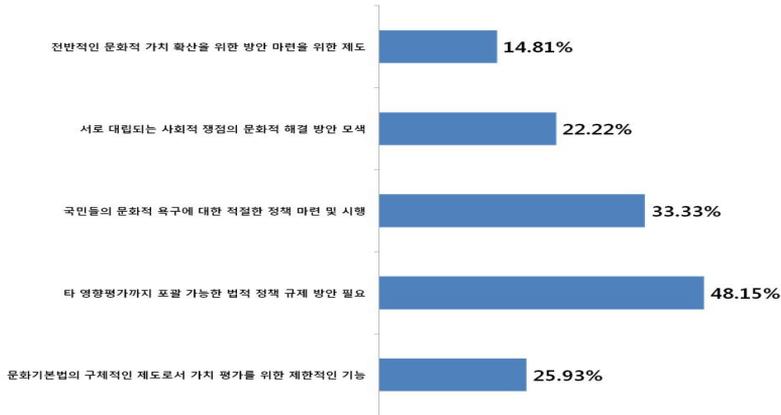
3)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묻는 복수 선택 질문은 아래와 같음

- ①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 법안의 구체적인 제도로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가치를 평가하는 제한적인 기능으로서 필요함
- ② 공공정책 및 사업에 있어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여 하드웨어 개발 및 계획, 소프트웨어로서의 문화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추진 영향평가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정책 규제 방안으로써의 문화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함
- ③ 이전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협의의 문화생활이 점차 광의의 화생활로 변화·발전하고 있는 만큼 문화와 관련된 욕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정책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함
- ④ 사회적 쟁점에서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 경우에 문화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문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사 영향평가제도 또는 문화 관련 법률들은 포괄적인 문화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이에 다른 평가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

- 문화 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전체 응답 중 “하드웨어 개발 및 계획, 소프트웨어로서의 문화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추진 영향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정책 규제 방안”으로의 문화영향평가 도입(48.15%)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나머지 문항의 필요성들도 큰 차이 없이 다양하게 선택됨
-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부터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필요성 문항들이며, 나머지 네 가지 필요성들을 포함하여 문화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문화영향평가 시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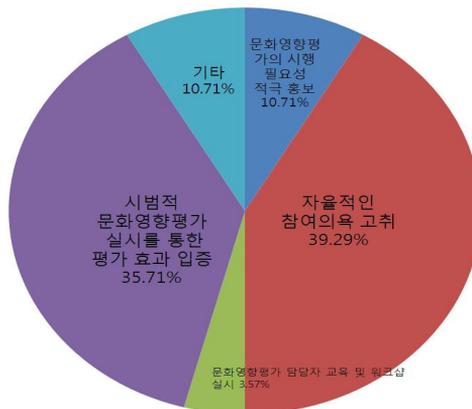
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지표개발 및 법제화방안, 2006



[그림 3-3]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4) 문화영향평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

- 문화영향평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높은 응답은 “시민 또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참여의욕 고취(39.29%)”이었으며, “시범적인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평가 효과 입증(35.71%)”이 그 뒤를 이음
 - 그 외에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필요성을 적극 홍보(10.71%), 기타(10.71%) 의견으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 계획 및 지역사회간 소통과 필요성 고취와 함께 필요조건을 다수 선택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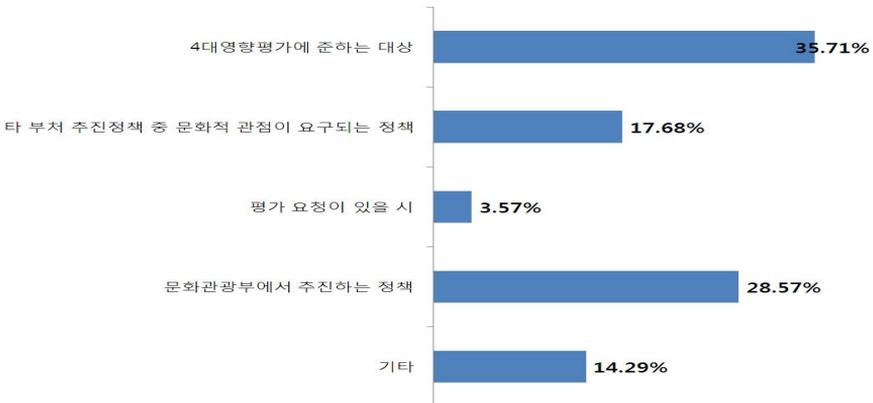


[그림 3-4]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

- 이는 문화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막연한 평가제도 중 하나가 아닌 평과 효과 입증을 통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평가가 될 때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욱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짐

5)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

-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은 4대 영향평가에 준하는 대상,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평가 요청이 있을 시, 타 부처 추진 정책 중 문화적 관점이 요구되는 정책, 기타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중 답변이 가장 높은 것은 4대 영향평가에 준하는 대상(35.71%)이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정책(28.57%)이 그 뒤를 이었음
 - 그 이외에도 타 부처 추진 정책 중 문화적 관점이 요구되는 정책 (17.86%), 평가 요청이 있을 시(3.57%)라는 의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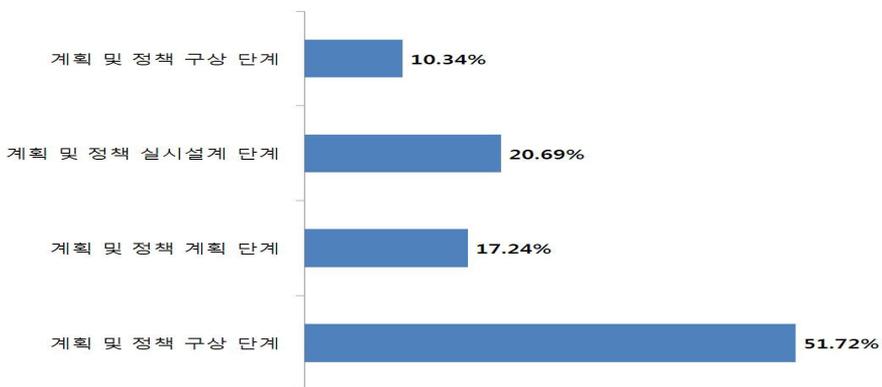
[그림 3-5]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

-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들의 사업실시 전 및 사업 계획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감소 방안 마련 및 대책을 강구하는 4대 영향평가에 준하는 대상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이는 문화영향평가 역시 “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 하여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는 평가제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시기

-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은 계획 및 정책 구상 단계, 계획 및 정책 계획 단계, 계획 및 정책 실시단계 단계, 계획 및 정책 집행 단계, 계획 및 정책 관리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중 계획 및 정책 구상 단계(51.7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계획 및 정책 실시단계 단계 (20.69%), 계획 및 정책 계획 단계 (17.24%), 계획 및 정책 관리(10.34%)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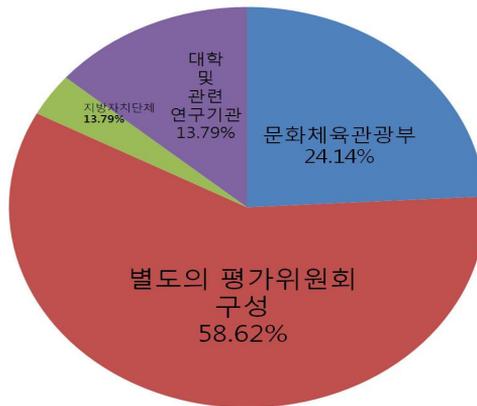


[그림 3-6] 문화영향평가 시행시기

- 이는 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 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며, 인간의 삶을 둘러싼 제반 문화적 관습과 신념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평가제도라는 문화영향평가의 정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7)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주체

-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주체를 묻는 질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NGO단체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중 가장 많은 답변은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58.62%)로 나타났으며, 문화체육관광부(24.14%),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13.79%)이 그 뒤를 이음



[그림 3-7] 문화영향평가 시행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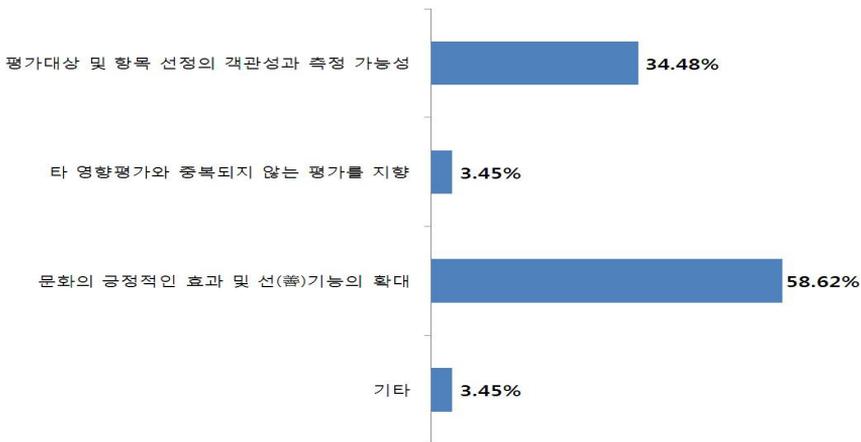
-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영향평가 및 대안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여타 문화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8) 문화영향평가의 우선 고려 사항

- 문화영향평가의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질문은 문화의 긍정적인 효과 및 선(善) 기능의 확대, 타 영향평가와 중복되지 않는 평가를 지향, 평가대상 및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측정 가능성, 평가 과정에서 비용 및 시간 소요

의 최소화, 기타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중 문화의 긍정적인 효과 및 선(善) 기능의 확대(58.6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그에 이어 평가대상 및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측정 가능성(34.48%), 타 영향평가와 중복되지 않는 평가를 지향(3.45%)을 우선 고려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음



[그림 3-8] 문화영향평가 우선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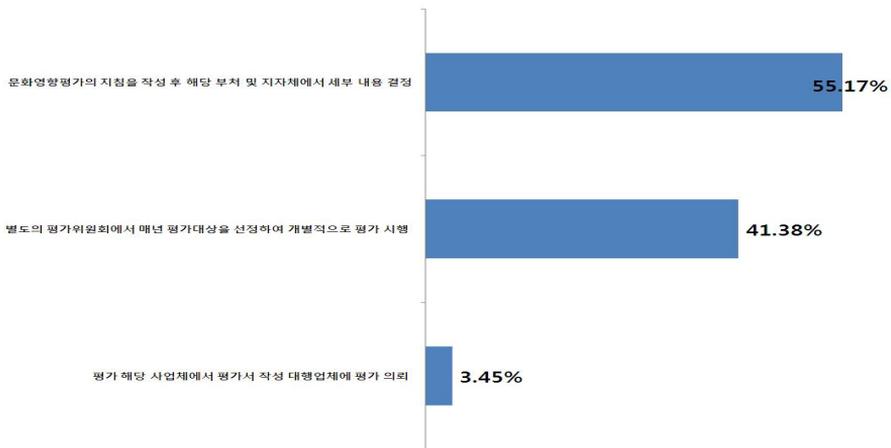
- 그동안의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 확산과 문화 발전이 국가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현 정부에서 문화 관련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바,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를 통한 삶의 질 및 가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적인 문화 위상 증대와 함께 국가경쟁력 경쟁력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문화의 긍정적인 효과 및 선(善) 기능의 확대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9) 가장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 방법

- 가장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질문은 문화영향평가의 지침을 작성 후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서 세부 내용 결정,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시행, 평가 해당 사업체에

서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에 평가 의뢰, 기타로 이루어져 있음

- 이에 대한 응답은 문화영향평가의 지침을 작성 후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서 세부 내용 결정(5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시행(41.38%), 평가 해당 사업체에서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에 평가 의뢰(3.45%)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그림 3-9] 가장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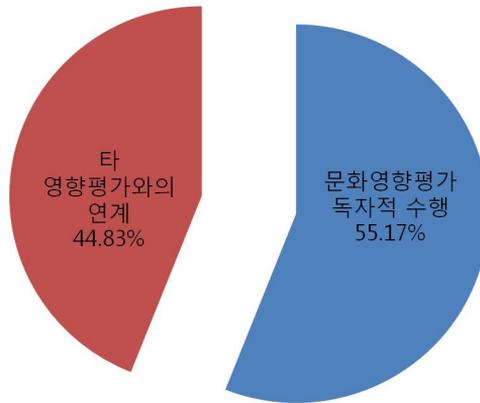
- 이는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주체를 묻는 질문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이 가장 높은 답변을 나타낸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 할 경우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 후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서 세부 내용을 결정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여짐

10)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방법

-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방법에 대한 질문은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 문화영향평가 독자적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에 대한 답변은 문화영향평가 독자적 수행(55.17%),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44.83%)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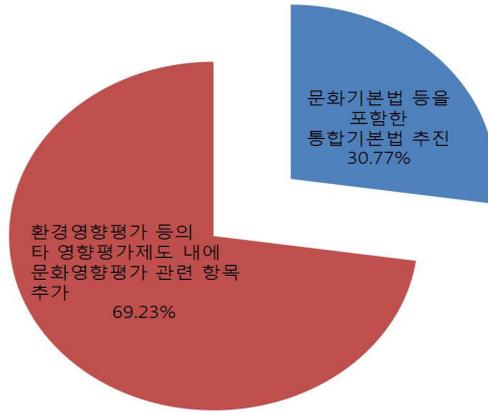
- 두 방법에 대한 응답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문화영향평가의 독자적 수행이라는 방법이 더 우세한 것은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시행이라는 시행 주체 및 효율적 방법과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3-10]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방법

11)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 방법

-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방법이라는 질문에서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를 선택 한 경우,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은 문화기본법 등을 포함한 통합기본법 추진, 환경영향평가 등의 타 영향평가제도 내에 문화영향평가 관련 항목 추가, 기타로 구성됨
- 이 중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타 영향평가제도 내에 문화영향평가 관련 항목 추가(69.23%)로 나타났으며, 문화기본법 등을 포함한 통합 기본법 추진(30.77%)이 그 뒤를 이었음



[그림 3-11]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 방법

- 문화영향평가는 하드웨어 측면의 평가 외에 소프트웨어 측면을 포함한 문화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바,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영향평가와 병행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여타 영향평가제도 내에 문화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하드웨어적 측면의 영향평가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문화영향평가의 특수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하는 방안 검토 가능함

12) 문화영향평가 기준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문화기본권보장 측면과 문화정체성확립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로 나누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5점 척도로 구성하였음
 - 정책목표 중 문화기본권보장은 3가지 평가항목의 8문항 평가지표로, 문화정체성확립은 3가지 평가항목의 9문항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음
- 「문화기본법」의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화기본권보장에 대한 평가지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권리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됨

- 문화영향평가가 문화에 대한 이중수혜 및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지역적 특성에 근거한 평등하고 효율적인 문화 정책 및 제도 시행을 위한 것인 만큼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접근성 및 문화향유에 대한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문화기본권보장이라는 정책목표의 평가지표로서 8문항 모두 보통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아 국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에 관한 권리에 대한 영향평가 지표로서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표 3-2〉 문화영향평가 기준(문화기본권보장)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균 점수
평등 / 다양성	문화적 지역적 격차 해소 또는 조장하지 않는가?	3.73
	문화적 차이와 문화다양성을 저해 또는 진흥하고 있는가? - 특정 집단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가?	3.81
	문화향유/창작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또는 소외되는 집단이 있는가?	4.04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활동을 위한 교육 및 안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가?	3.85
자유 / 자율	문화향유 및 창작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자율권을 저해 또는 보장하는가?	4.15
	문화 활동을 위한 적절한 접근 및 교육과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4.15
소통 / 교류	새로운 문화/트렌드 접촉 및 타 문화 간의 소통/교류 기회를 차단 또는 보장하고 있는가?	3.69
	문화향유를 위한 경제적 접근성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가?	3.77

- 문화정체성확립에 대한 문항은 문화에 대한 전통적·의식적 부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3-3〉 문화영향평가 기준(문화정체성확립)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균 점수
정신 문화 / 관습	집단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공동체/지역 의식)을 저해 또는 존중하고 있는가?	3.62
	전통적 관습/통념(예: 가족관계, 충효예 등)/가치관 해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3.19
문화 유산 / 계승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에 저해 또는 보존을 위한 노력을 내포하고 있는가?	3.70
	전통적인 문화경관을 보존/발전하는데 저해요소 또는 증진 노력을 내포하고 있는가?	3.88
상생 / 발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저해 또는 진흥하고 있는가?	3.50
	문화 관리에 대한 기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3.92
	우리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3.62
	문화융합 및 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발전을 방해 또는 협력하고 있는가?	3.89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반응이 가능한가?	3.65

- 문화정체성확립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지표는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인 문화 발전 및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정체성에 대한 확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평가의 한 부분임
- 문화기본권보장이라는 평가지표 보다 평균점수는 다소 낮으나 9문항 모두 보통 이상의 적절성 평균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후 위와 같은 기준의 평가지표 구성 시 평가 대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문화기본법보장 및 문화정체성확립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따른 평가지표는 기본적인 평가기준을 포함한 포괄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대

상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시 추가적으로 문항을 구성할 수 있음

■ 문화영향평가 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

- 문화영향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평가지표 외에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서술형 문항으로 질문하였음
- 이와 관련해서 단순한 평가 및 대안마련이 아닌 체험교육 등 실제적으로 문화와 세대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 구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 문화가 개인의 삶과 개인들이 모여 구성한 지역사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 문화영향평가가 시행될 경우 합리적인 규제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12)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기타 의견

-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영향평가 또한 문화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나 주체 등에 따라 실시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함
- 이에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앞서 설문에 의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기타의견을 질문함
- 문화영향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 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가 과정을 위한 과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 방향을 설정하고 매우 구체적인 적용과정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대부분의 평가가 형식화되어가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가치 지향적 및 무형적 평가로 눈에 보이는 실효성이 약한 것이 사실이나 무형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문화영향평가가 실질적인 평가로 작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등을 통한 문화영향평가만의 필요성을 극대화 하고 그것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면 매우 중요한 평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평가제도 설계 시 평가 대상 사업(또는 정책)을 구체적 대상으로 한 평가 요소를 추가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는 기타 의견도 제시됨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렵고,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전제로 한 설문조사에 응하기에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문화영향평가 시행 시 이러한 의견의 차이를 줄이고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영향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운영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제3절

시사점

1. 시사점

- 문화영향평가는 대상이나 평가 항목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대상 설정 및 평가가 쉽지 않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가 평등하고 다양하게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 및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반드시 고민 할 필요가 있음
 - 조사결과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55.17%) 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24.14%)으로 나타나는 만큼 국민과 국가차원에서 동등하게 제도의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만큼 문화용성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 및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바 문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보다 나은 제도 및 정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세계적으로는 문화다양성 협약이나 FTA 협상 등을 비롯하여 국가 이익과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선진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상충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정체성과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FTA 협상에 있어 미국, 일본 등은 문화 분야도 하나의 상품으로 통상협상에서도 시장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EU, 캐나다 등은 문화의 특수성을 내세워 통상협상에서 문화는 교역(Trade)이 아닌 교류(Exchange)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는 현재 FTA 협상에 있어 한미 FTA 개방수준을 최대범위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등 국가마다 FTA 협상에 임하는 다른 자세와 견해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협상에 있어 우리나라 역시 FTA가 국가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체계적인 문화영향평가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 내에서 또는 대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정책과 계획 등을 국가 및 민속의 지속성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 정서, 가치관 및 역사관, 시대정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모니터링하고 추적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문화영향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제4장 ●●

실행방안



제1절

문화영향평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 문화영향평가 도입 배경

가. 사회적 배경

-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의 영향을 받던 것이 20세기 후반까지의 현상이었다면 21세기는 문화가 성장을 주도하고 도시의 활력을 창조하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동인이 됨
 -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여가시간 증대 등의 사회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영역에 대한 관심 증가의 계기가 됨
- 특히 문화의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부터이며, 이를 통해 문화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 2000년대에는 문화 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한국문화의 세계화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가치의 보편적 확산이 강조됨
- 문화는 시민들의 생활양식으로 도덕, 법, 관습은 물론 예술작품을 즐기고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현대사회를 이끄는 인간 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문화에 대한 견해를 사회의 중요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수립하며 사회의 안정화, 개인의 미적 감성은 물론 과거에는 없던 교육기능과 같이 더욱 많은 복합 기능 수행이 요구됨
- 따라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향상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 격차를 해소해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가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서 인정받고 이러한 기초에 문화 정책도 시대의 변동에 맞게 수립 및 시행되고 있음

-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등 생활의 변화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대 사회는 문화 향유를 삶의 가치로 두는 “즐거는 삶”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문화의 성격 또한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즉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로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도록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문화기본법에서 이를 명시화하고 있음

제 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과거에는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며 소홀히 다루었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문화가 중심이 된 지방자치 행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됨

나. 정책적 배경

- 1990년 문화영역을 별도로 관장하는 문화부가 출범 된 이래 문화정책이 포괄하는 행정영역들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법률제정 수요를 통해 나타남
- 물리적 환경 중심에서 효율성을 고려한 문화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문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분야의 핵심 전략 중 문화 부분이 언급 되면서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 주요 사업을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구상되기 시작함
-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의 구현을 제시하고,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을 정부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여 광의의 문화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함
 - 문화융성 시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자율, 상생, 융합이라는 키워드 아래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한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국내외

문화적 가치를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확산·전환 및 실현하기 위한 국토, 노동정책 등 분야별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문화 융성의 8대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함

- 이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실효적 정책수단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여 문화융성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한류의 질적 성장 견인하는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국토, 노동정책 등 분야별 정부정책에 문화영향 평가제 시행, 가출 청소년 등 대상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회취약 장소에 문화적 공간 조성,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추진, 문화와 품격 있는 정상외교, 전통생활 공예품 재외공관 활용 등 주요 계기대상별 한국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문화융성위원회, 제2차 회의내용 중 일부 2013.10.16)

- 문화기본법(2013.07.25발의)은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광범위한 문화정책 관련 법률로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산업진흥법 등 이전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특정 대상 및 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음
 - 그 외 여가활성화기본법(남경필의원, 2013.1.13 발의), 문화기본법(2013.12.10 국회본회통과), 예술인복지법(2011.11.18) 등 기존의 법과 다른 형태의 법이 제정이 예정됨
-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문화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적 성격을 가진 획일적 문화가 아닌 규범적 성격을 가진 다양성과 특수성 등의 긍정적인 문화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문화기본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다. 국제적 배경

- 경제적 자본에 의한 문화독점 및 문화 획일화 현상을 우려하면서 자국의 문화고유성 보존 및 문화다양성이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함
 - 경제자본에 의한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면서 세계문화를 형성하여 주변부 국가의 문화적 독창성 파괴하고 문화 간의 신 종속관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제기되면서 자국의 문화정체성 및 고유성에 대한 보호에 대한 보수적 태도인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함
 - 이는 문화정체성과 자국의 자주적 생존권과의 밀접성을 자각하고 문화 주권의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짐
- 개인의 문화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문화다양성 개념이 양립함
 -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체성에 근거한 권리를 주체로서 배타적인 설정을 주장하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¹⁵⁾에서 경제자본에 의한 문화 획일화에 대응한 문화다양성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음
 - 인류 생활양식의 총체이자 정체성의 중심인 문화다양성 보호에 대한 필요성 제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2005)이 대표적인
-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문화정체성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 사용
 - 국가 간 이해관계에서 문화정체성이 갖는 포괄적 개념의 범위로 개별 국가의 문화권이 보호될 경우에 발생할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문화다양성이라는 보다 모호한 개념으로 접근
 - 여기서 사용한 문화정체성은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문화적 이슈에 연결된 개념으로 사용

15) 김남국(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국제정치논집 제50집1호, p262-284

- 즉 문화정체성은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 사회적 결속, 발전의 문제”와 직결된 보다 확장된 개념¹⁶⁾으로 논의됨
- 문화는 예술 및 문학 등 장르의 예술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문제는 예술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의 정체성, 사회적 결속 및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 등과 같은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함

〈표 4-1〉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논의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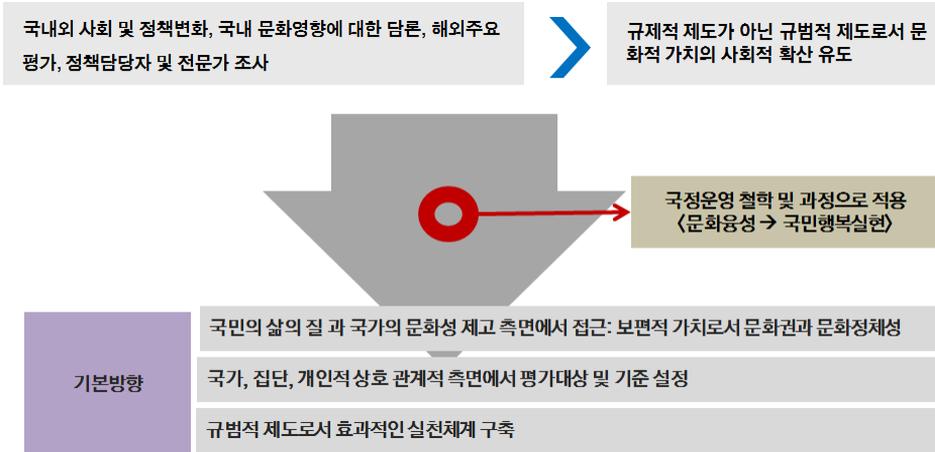
구분	내용
세계인권선언 (1948)	개인의 문화적 권리: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27조)
ICESCR (1966)	개인의 문화적 권리: 교육의 권리(13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 향유 권리, 자신이 저자인 과학, 문학, 예술 활동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보호 권리(15조)
ICCPR (1966)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27조)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 (1992)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해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사적, 공적 장소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	문화다양성 및 소수집단의 인권: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1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인간존엄성 존중 및 소수집단과 원주민의 자유와 인권(4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권리(5조), 창의성의 원천으로 문화유산 보존(7조),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8조) 문화산업의 육성(10조), 문화다양성증진을 위한 공공협력(11조)

16) 김효정, 문화다양성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2012, p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 위 책 p10, 표1 재인용

제2절

기본방향



[그림 4-1] 기본방향

1. 기본방향

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문화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

- 국정운영 철학인 문화융성 실천과 국민행복 실현의 구체적 실천 수단으로서 문화영향평가제도 접근
 - 취임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문화적 가치는 1) 국가기반으로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 2) 국민행복 조건으로서 일상생활 속 문화격차 및 갈등 해소 3) 창조경제동력으로서 창작활동장려 4)문화융성시대를 견인하는 문화다양성 존중 및 발현 등으로 정리 가능함
 - 즉,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배경을 의미하는 문화정체성에 대한 보호 및 존중과 국민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장과 진흥으로 요약됨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류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국민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유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의 계층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되는 문화, 인류평화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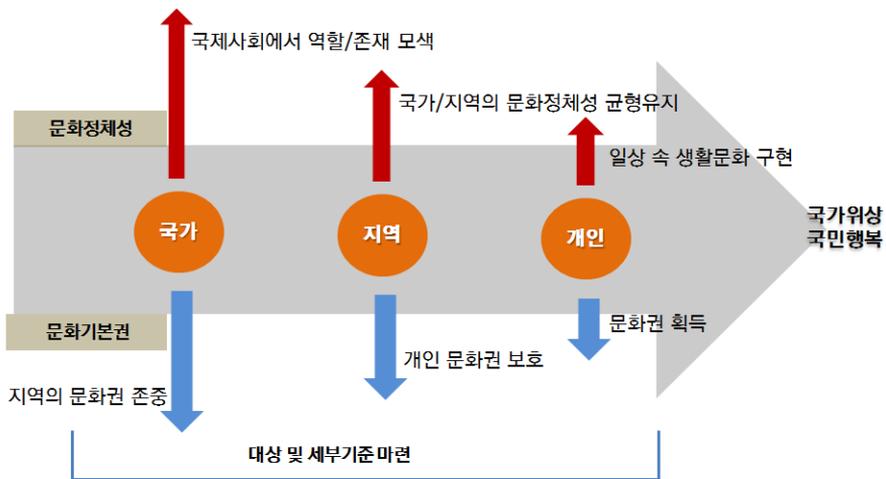
- 국가의 지속성과 국민 행복차원에서 존중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제도 구현
 - 국제화 및 서울 중심적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역 차원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해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국민 개인의 차원에서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문화, 문화적 자유 등이 타인이나 사회적 제도 등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권리로써 문화기본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표 4-2〉 국가의 위상과 국민행복차원에서의 핵심가치

구분	내용
문화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시대와 지역중심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의 리더국가로서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와 민족, 지역의 존재이유를 분명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역의 특정문화 혹은 집단의 배경(문화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국민성, 문화변용, 언어, 가족형태, 사회적 역사 및 시대인식, 정치적 성향 등) 존중할 필요가 있음
문화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평등의 원리에 따라 폭력 없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담보 - 문화적 참여의 권리,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권리, 문화의 발달과 전파, 문화유산의 보호, 창조적 활동을 위한 자유,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집회와 연합의 자유, 교육의 자유, 사상, 의식 혹은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비차별의 원리 적용

나. 국가/지역/개인 등 관계적 측면에서 평가대상 및 기준 설정

- 글로벌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의 문화적 가치와 국민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실현
 - 국가차원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하는 한편 문화적 자유를 보호하고 다원주의적 사회와 관용을 통해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문화적 격차가 아닌 차이를 통해 실험, 다양성, 상상력, 창조성 등을 고무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가차원, 지역차원, 개인차원에서 문화정체성 및 문화기본권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감



[그림 4-2] 국가/지역/개인차원에서 제도의 목적과 가치 구현

다. 규범적 제도로서 효과적인 실천체계 구축

- 국가 및 국민의 문화적 삶과 가치에 영향을 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 등을 대상으로 규범적 평가제도로서 성격을 규명함
 - 기존의 평가제도들의 규제적 성격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계획을 평가하여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표 4-3〉 평가제도의 특성

구분	내용
규제적 평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4대영향평가가 대표적 - 공공/민간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대규모 개발/시설조성 사업 등 대상 - 강제적 평가제도로서 사업절차에 필요/사업진행과 관계
규범적 평가	-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이 대표적 - 주로 공공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임의선택(강제성 없음) - 사업 및 정책시행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추구하는 평가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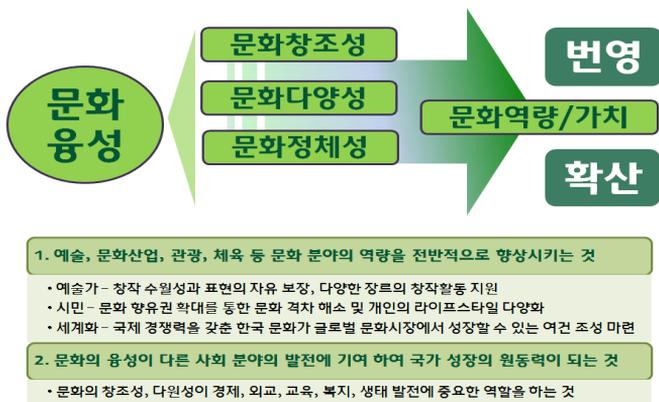
-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역·개인차원에서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나 프로그램 단위에서부터 국가최고 정책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문화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문화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문화생활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시작으로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등을 구체화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획, 조사, 실행, 모니터링 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독자적인 실천체계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평가기관 등 체계적인 운영체계 마련

제3절

실행방안

1. 목표

- 개인 및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 해소 및 문화기본권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 문화를 통하여 국민행복 달성
 -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¹⁸⁾ 문화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76.3%)과 국가경쟁 강화(17.5%)로 나타남
- 국민과 국가의 문화적 역량강화 및 가치 확산을 통하여 국가미래를 담보하는 문화융성시대 전개
 - 문화창조성, 문화다양성, 문화정체성 등을 지지하고 진흥을 통해 획득한 문화가치와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국가발전 도모
 - 지향할 문화가치로 창조성(36.3%), 정체성(21.3%), 다양성(16.3%) 순으로 응답



[그림 4-3] 문화융성시대 이해

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지표개발 및 법제화방안, 2006

2. 대상 및 범주

가. 기본원칙

- 「문화기본법」 제 5조 4항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하면 평가대상으로 타 부처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문화적 관점이 요구되는 정책(43.8%),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정책(20.0%)로 나타남

5조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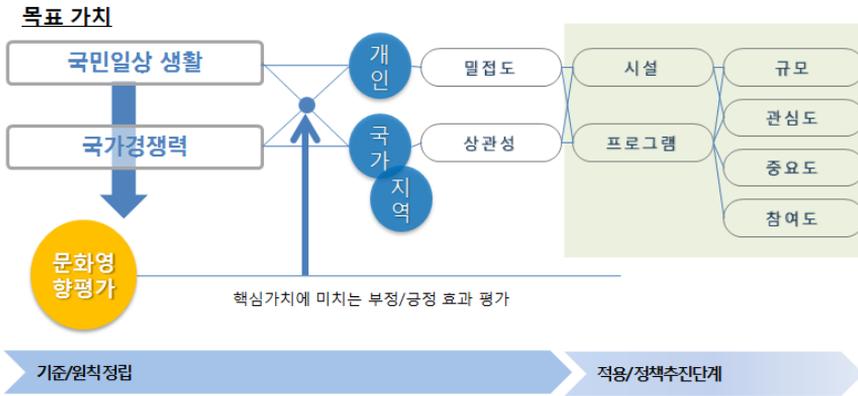
- 평가대상 선정기준은 정책 및 계획은 목적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가·자치단체 운영과 국민생활 차원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 구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분야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밀접도 높은 분야와 정책 및 계획
 - 국가와 집단의 경쟁력과 상관성이 높은 정책 및 계획

〈표 4-4〉 평가대상 선정기준

구분	내용
국민일상생활과의 밀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본생활(의/식/주), 교육, 여가생활 등과 밀접도가 높은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여가정책(시설 및 프로그램) 및 계획, 미디어방송관련정책, 교육정책 및 계획, 주거시설 및 도시환경 관련 계획 및 정책 등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위상 및 경쟁력 상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대에 대응 국가의 문화정체성 및 문화적 가치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정책과 계획을 중심으로 선정 - 국제 관계, 지역발전 및 중장기계획

- 대상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문화영향평가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설정함

-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로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세부선정 기준 마련
- 관련시설 부분은 규모 및 관심도, 중요도 등을, 프로그램은 규모와 참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4-4] 평가대상 선정기준 설정방향

예1: 이벤트(메가이벤트 및 축제)
 - 규모: 사업비, 참여 국가 및 단체 수, 관객수 등 기준
 - 성격: 국가 및 지역경쟁력 차원에서 계획

다. 핵심대상

1) 국민일상 생활차원에서 접근

-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국정 기조 및 국내의 사회흐름을 고려하여 국민일상생활 속 문화를 구체화하고 국민일상 생활에 밀접도가 높은 것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설정함
 -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성이 높을수록 직간접적으로 사회적·문화적·가치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
 - 국민일상생활을 기능 및 활동별로 분류하며, 크게 기본생활, 여가생활로 나눌 수 있음

- 항목별 계획 및 정책 내용에 따라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나눔

〈표 4-5〉 일상생활차원에서 분류

구분	내용
기본생활	-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소 즉 의식주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 - 식생활, 주거생활, 의복 등 ex, 패션산업중장기계획, 음식특화거리조성계획, 행복주택보급계획 등
여가생활	- 여가생활 및 활동에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상 - TV(여가활동1위), 영화(선호활동1위), 이벤트(메가이벤트 및 축제 국가 및 지역기여도 높음) 등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 ex,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개최계획, 영화산업진흥계획 등

2) 국가 및 지역운영차원

- 글로벌·지방화시대에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문화일상성과 문화정체성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함
 - 국가·지역의 경쟁력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정책 및 계획의 경우 국민의 문화적 삶과 가치보다 국가·지역의 이익이 우선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일상성과 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생 가능
 - 이러한 측면에서 대내외와 관계 속에서 평가대상을 범주화하면 대외교류 및 협력, 산업경제, 인력양성 등으로 구분함

〈표 4-6〉 국가운영차원에서 분류

구분	내용
대외교류	- 국제관계 및 교류와 관련된 정책 ex, 국제ODA정책 및 사업, 다문화정책
산업경제	- 국가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및 계획 ex, FTA협정체결, 국가기관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정책, 국가에너지정책
인력양성	- 개인 및 국가역량을 위해 필수적인 국민 교육에 관련된 정책 및 계획 - 교육을 통해 문화적 가치와 철학, 사회성, 국가관 등 형성 ex, 공교육 교재 및 커리큘럼, 수험제도, 평생교육계획

- 국민일상과 국가 및 지역운영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 및 국민차원에서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은 대규모 정책 및 계획일 수록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평가대상 선정
 - 예를 들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하는 예산규모 이상의 계획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다각적 검토 필요

〈표 4-7〉 평가대상

기준	대상		내용
국민일상생활과의 밀접성	여가	시설	여가문화시설 계획 및 정책
		프로그램	여가문화정책 및 계획 - 방송, 영화, 이벤트(축제포함), 시설 내 프로그램
	기본	시설	주택 및 도시, 기반시설 조성 계획 및 정책
		프로그램	주거, 식품 및 위생,
국가 및 지역의 위상 및 경쟁력 상관성	대외교류	시설	국내외에 관광/한류단지조성
		프로그램	대외협력프로그램, ODA 프로그램 - 아시아동반자, 문화ODA, 세종학당, 한류문화정책
	산업경제	시설	산업시설 및 단지조성
		프로그램	FTA,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인력양성	시설	교육시설 계획 및 정책
		프로그램	중장기 공교육정책 및 평생교육 정책 등 - 교재, 교육대상, 커리큘럼

3. 평가기준 및 지표

가. 기본원칙

- 국내외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흐름을 토대로 국정운영 철학인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국가·지역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화영향평가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함께 공통된 기준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
- 문화여가 분야 이외의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계획 및 정책에 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됨으로써 일상생활 속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 포괄적인 영역까지 문화적 역량과 가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면서 종합적인 지표체계 구성

나. 지표성격

- 문화영향평가는 규제적 성격이 아닌 규범적 성격의 평가제도로서 기존의 평가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적이며 정량적인 지표를 배제하고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인 규범적 지표의 성격을 가짐
 - 추구하는 가치 중심의 정성적 지표를 사용하며, 평가자의 주관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 방법 등에 있어 통계, 만족도 등 사업추진배경 및 현황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객관성 및 신뢰도를 담보하여 나감

다. 지표구성

- 국민일상생활과 국가운영 차원에서 계획과 정책이 국민개개인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 및 집단의 문화정체성 보호를 통해 미래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한국문화영속과 세계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국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 핵심가치인 문화기본권 및 문화정체성 보존을 위하여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정책 및 계획 주체들이 추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함
 - 정책 및 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며, 일차적으로 공동된 지표를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대상별 평가지표를 구체화하여 나감

1) 지표구성 체계

- 지표체계는 기존영향평가 사례와 같이 <주제(핵심가치)-부주제-지표> 등 3계로 구성함
 - 지표의 구성단계는 정책실천과정으로 이해 가능하며, 지표의 구성 및 세부항목은 평가분야·정책·계획·프로그램·시설 등 평가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표개발이전에 평가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지표의 일반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평가대상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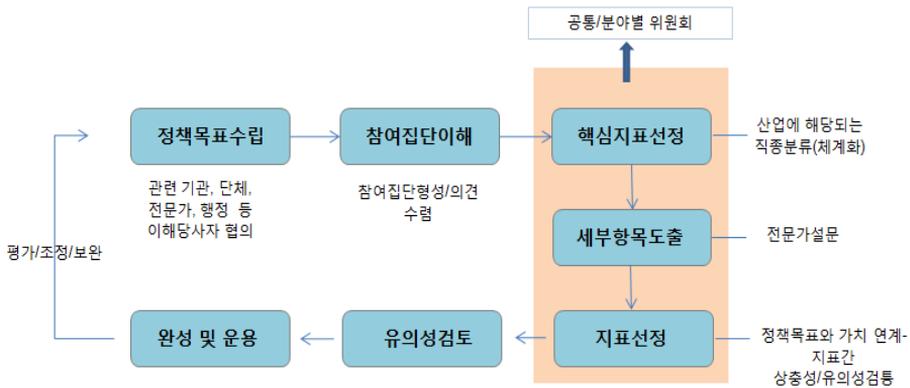
<표 4-8>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계획)의 분석평가 지표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II. 전략 및 중점과제	3. 성별 형평성	③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자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④ 법령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⑤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

*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의미

2) 지표구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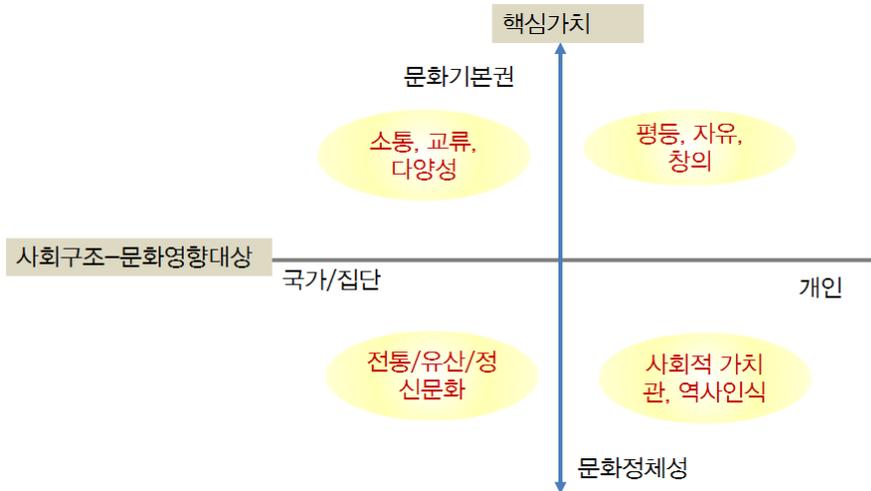
- 주요지표는 국민의 일상과 국가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한 뒤 현재 문화기본법 및 국정운영철학 등에서 당면한 이슈들을 연계하여 주제별로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나감
 - 지표개발 과정에서 참여집단의 모집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시행과 정에서 평가목표와 실효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나감



3) 지표의 범주화

- 문화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세방화 시대를 맞아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국정운영 철학에 대응하여 창의적 문화융합 등을 통한 문화적 역량강화와 문화적 격차해소 및 자율적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 개인과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하여 국가의 위상과 존재를 공고히 함
 - 즉 국가와 집단, 개인 간의 공동선을 창출하는 원리로서 문화의 가치체계를 설정하여 문화영향 대상과 지향가치 간의 순환적 관계 속에서 이해, 공감, 소통, 상생을 바탕으로 핵심가치를 획득함
- 문화영향의 대상으로 국가-지역-집단-개인의 차원 속에서 동시대의 동공간 속에서 보편적 원리에 의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영향의 대상을 축으로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내재적 속성 및 특성을 도출하여 범주화함



[그림 4-6] 지표의 기본구조

<표 4-9> 지표범주화에 따른 세부지표 개발

정책목표	상위지표	하위지표
문화기본권 보장	평등/다양성	문화격차 및 차별해소, 문화향유 및 창작기회 균등
	자유/자율	창작/표현의 자유 및 자율성 보장
	소통/교류	문화공유, 이해/학습, 발산
문화정체성 확립	정신문화/관습	사회/역사인식, 공동체문화 공유/확립
	문화유산/계승	문화유산보존, 진흥
	상생/발전	새 시대에 대응 문화변화 발전

4) 세부지표

- 문화영향평가의 정책목표 및 핵심가치를 담보하는 규범적 가치로 평등/다양성, 자율/자유, 소통/교류, 정신문화/관습, 상생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대상별로 관련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측정된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계량화하여 지수로 나타내는 형태를 벗어나 정책목표 및 핵심가치 제고 여부를 서술형으로 개발하여 평가함

- 시설 측면 : 공간 및 시설조성으로 인하여 규범적 가치가 부정 또는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 프로그램 측면 : 계획이나 정책내용이 평가목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 문화영향평가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문화정체성 확립이 상호 상충된 개념이지만 이들 간의 균형은 글로벌·문화다양성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표 4-10〉 평가항목(예)

정책목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보장	평등/다양성	문화적/지역적 격차를 조정하는가? - 문화의 지역이나 집단간의 불균등을 초래하고 있는가?
		문화적 차이와 문화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 특정 집단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가?
		문화향유/창작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 특정한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는 집단이나 계층이 있는가?
	자유/자율	문화향유 및 창작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자율권을 저해하는가?
	소통/교류	새로운 문화/트렌드 접촉 및 타 문화 간의 소통/교류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가?
문화정체성 확립	정신문화/관습	집단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공동체/지역 의식)을 저해하고 있는가?
		전통적 관습/통념(예: 가족관계, 충효예 등)/가치관 해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문화유산/계승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에 저해 또는 보존을 위한 노력을 내포하고 있는가?
		전통적인 문화경관을 보존/발전하는데 저해요소가 내포되어 있는가?
	상생/발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있는가?
		우리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문화융합 및 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발전을 방해하고 있는가?		

4. 평가주체

가. 기본원칙

- 평가의 독자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책임담당관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함
 - 평가 주관부처, 각 부처 및 기관별로 평가담당조직, 평가실행조직 등을 체계화함
- 문화영향평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체평가, 선정평가 등 2가지로 구분하여 중앙 및 지방 등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문화기본법에서 추구하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스스로 실천하고 재검토 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평가담당관을 지정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아울러 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국민문화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및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때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직운영

1) 문화영향평가위원회 및 책임담당관제 도입

-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관 부처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관계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담당관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과 보다 큰 차원에서 문화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의 하나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문화기본법」근거로 시행령에 정책심의위원회 또는 문화영향평가위원

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 및 기관에 평가담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감

〈표 4-11〉 문화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구분	장점	단점
평가책임담당관	관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아래로부터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유도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소극적 참여 평가의 속박력 희미하여 추진미흡우려
문화영향평가위원회	국가문화정책달성 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 추진이라는 당위성 확보 용이	강제적 성격의 평가제로 부정적 인식확대 우려, 다수 평가위원회의 구성으로 국가운영 부담 가중

- 어떠한 경우라도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 평가항목, 검토서 작성 및 검토 등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함
 - 필요하다면 별도의 문화영향평가센터를 두고 평가대상별로 평가항목 및 지표, 검토 및 검토서 작성,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문화영향평가수행기관 : 문화영향평가센터

- 문화영향평가 수행은 평가기관을 가칭 문화영향평가센터 등을 별도로 조직하여 평가 또는 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거나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 평가대상별 정책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총괄 검토함

〈표 4-12〉 평가수행방법

구분	내용	사례
별도의 평가센터 운영	평가 전문기관 설립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시행, 결과보고서 작성	고용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민간위탁	민간 전문기관에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후 관계기관에 제출	4대 영향평가 등
시행기관 자체평가	정책수행기관에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진행, 평가보고서 작성후 총괄부처에 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 고용영향평가 자체평가 등

2) 평가 이원화(자체, 선정평가)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는 각 부처별 · 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부서에서 해당 지역의 정책 및 계획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경우에 따라 국가 및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정책 및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특정정책 및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정부 및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를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평가 목표 및 핵심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표 4-13〉 문화영향평가 이원적 운영

구분	역할	비고
선정평가	평가지표 기준 및 모델 제시 국제-국가-지역-개인 관계 속에서 제도정착화 유도	평가위원회 주관
자체평가	피평가 기관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추가 개발 독자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성/역량 특성화	요청평가로 평가활성화 유도

5. 평가방법 및 절차

가. 평가시기

- 평가는 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 사전평가로 진행함
 -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규범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긍정적 영향이 증진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평가결과 평가대상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운영방안을 검토함

나. 평가 절차

-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평가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책임담당관은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 평가 결과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책임담당관에서 제출함
-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개선안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정책 및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
- 해당부처 및 기관은 반영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함

〈표 4-14〉 평가절차



■ 평가절차 1: 고용영향평가/별도 기관을 통해 실시

평가는 자체평가, 요청평가, 선정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음. 평가중점사항은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정책과 고용과의 연계성, 정책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 등 산출 등임(2014.1월 시행령 개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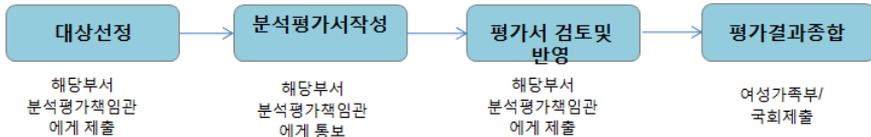
- 자체평가: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요청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에 요청하여 소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선정평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정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가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자체 고용영향평가 실시)



■ 평가절차 2: 성별영향분석평가/수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실시

평가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사업과 지자체의 세출예산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위원회 등에 해당하며 대상선정에서 평가서 작성까지 해당부서/기관에서 수행하고 총괄기관인 여성가족부는 결과를 취합하여 국무보고 후 국회 제출함



[그림 4-7] 성별영향분석평가절차

6. 평가결과 활용

가. 정책 홍보 및 마케팅 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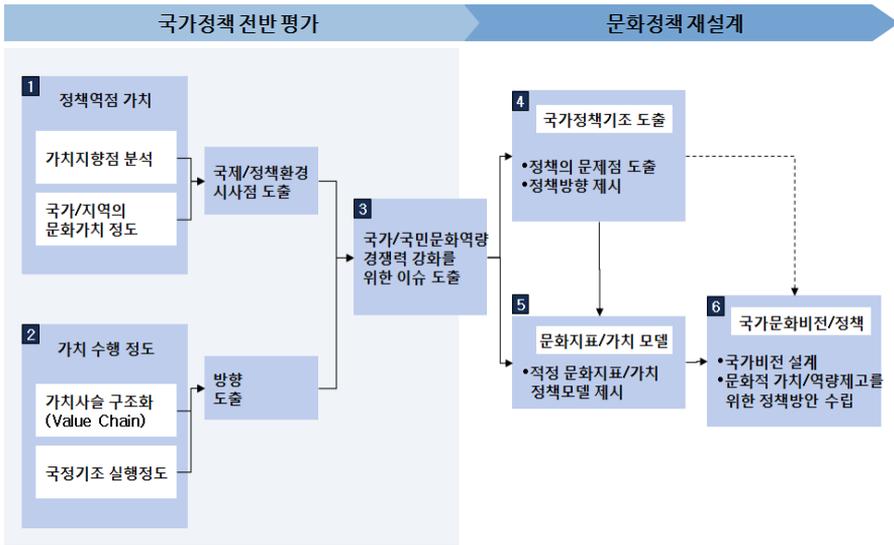
- 관계 부처, 관련 송부하여 정책개선 및 재정운용, 홍보마케팅 자료로 활용함
 - 국정운영철학인 문화융성 시대에 국민행복과 국가역량을 선도하고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관으로서 홍보·마케팅

■ 안) 문화공감우수기관 및 정책지정

- 평가결과를 토대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융성위원회가 지향하는 문화정책/문화가치 공감 및 실천하는 우수 정책 및 계획을 지정하여 발표
- 피 평가에 대한 거부감 완화 및 적극적 참여 유도방안으로 활용

나. 중장기적 국가문화비전과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 관계 속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 문화비전과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 활용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문화영향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현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적 환경과 지향점, 역량 등 파악가능



[그림 4-8] 국가문화정책설계과정

7. 제도화 방안

가. 기본전제

- 문화영향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같이 단독법안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방법과 개인정보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같이 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현재「문화기본법」이 2013년 12월 10일 국회본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기본법 제5조 4항 및 5항을 근거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임

제 5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이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나. 시행령구성

- 시행령은 평가의 대상, 평가시기, 평가시 고려사항, 평가기준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기존 평가관련 법률을 토대로 구성함

〈표 4-15〉 시행령 구성(안)

구분	내용
평가대상	평가대상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평가기준	1. 평가시 고려사항 2.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평가지침통보	1. 피평가 기관에 평가지침 통보에 관한 사항
평가시기	1. 해당 계획 및 정책 시행 전 등 평가시시에 관한 사항
평가서 작성	1. 대상의 목적 및 개요 2. 평가기준에 대응 정책 및 사업의 문화적 특성 3. 조치방안
평가절차	1. 정책실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 2. 특정평가대상 평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
문화영향평가위원회	1.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기능 3. 위원회의 구성 4. 위원회의 운영
평가책임관지정	1.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책임관의 임무
평가기관	1. 정책의 분석/평가 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기준, 지정조건
평가교육	1. 평가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대상범위 및 횟수
평가자문	1. 평가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 2. 평가자문비 지급에 관한 사항

문화영향평가관련 시행령(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p>제5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이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p>	<p>제00조(문화영향평가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기본법 제5조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 3. 예산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하여 문화영향을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p>제00조(평가기준) 문화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문화기본권 침해요소 2. 국가 및 지역의 문화정체성 침해요소 <p>제00조(평가지침통보) 문화체육부장관은 00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평가방법 등 평가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00조(평가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계획의 수립 전에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p> <p>제00조(평가서작성) 문화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정책의 목표 및 개요 2. 대상정책의 개별지표에 따른 문화영향 내용 3. 문화영향평가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조치사항 <p>제00조(평가절차 및 방법) 문화체육부장관은 00조2항에 의거하여 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평가대상을 선정한다.</p> <p>제00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문화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래창조부, 교육부, 국토건설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에 소속된 평가책임관 2.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문화부장관이

문화기본법	시행령
	<p>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p>제00조(평가책임관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장/국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평가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대상선정에 관한 사항 2. 평가실시 및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4. 평가교육에 관한 사항 <p>제00조(평가교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년 1회이상 평가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00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00조(정책 평가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책의 분석평가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다. 한계점 및 제언

-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제도 시행과정에서 근거법 및 세부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4-16〉 한계점 및 제언

구분	내용
법적 위상	<p>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대상선정에서부터 평가, 후속처리 등 세부시행내용이 필요하나 법에서 5항 4, 5에 정리되어 있어 조항으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p> <p>- 예)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등</p>

구분	내용
결과조치에 대한 사항	<p>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 어떻게 국가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필요</p> <p>-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차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p>
평가운영위원회구성 등	<p>'기본법 제5조5에 평가방법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시행령에서 위원회구성 및 평가대행기관 지정 등을 함에 따라 기본법을 근거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할 심의위원 등과 중복구성 우려</p> <p>- 평가책임관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 또는 관계 기관의 자체 평가를 통하여 평가의 목적 및 가치를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검토 필요</p>
시범운영 등	<p>본격적인 제도 실행전 시범사업 운영이 필요</p> <p>-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우선 평가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평가대상 선정, 방법 등 구체적 논의 전개 필요</p>
평가전담 조직 등	<p>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기관 이원적 진행을 위해서는 평가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관련 공무원 등에 평가교육,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업무 필요함.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평가전담 조직의 필요성 제기</p>

제4절

제도운영방안

1. 단계적 추진

- 국민적 공감 속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추진 단계를 다음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준비단계, 시범운영단계, 수정보완단계, 전면시행단계로 구분

〈표 4-17〉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이원적 운영

구분	내용	비고
준비단계	법적 근거, 조직 구성, 지표 및 절차, 시기 등 실행방안 준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서 주도
시범운영단계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이나 계획 중 국민체감도 및 민감도가 높은 것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민감도/체감도 및 예상되는 문화영향 등에 대한 사전조사연구 진행 - 대표 평가지표를 토대로 세부평가지표 수정보완 - 제도에 대한 국민 홍보 병행	
수정보완단계	제도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실행방안 등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진행 - 운영조직, 평가지표, 절차, 결과활용 등 다각적인 검토 진행 - 홍보 및 평가관련 담당자 교육 병행	
전면시행단계	제도전면 시행 - 위원회, 평가센터 등 역할과 구분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시범운영

- 시범운영 평가대상 선정 및 운영
 -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계획을 대상으로 운영

-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평가대상 선정

〈표 4-18〉 시범운영(안)

구분	내용	비고
목적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제고	
대상	국민적 민감도/체감도가 높은 정책 및 계획을 대상 - 사전 조사를 통해 국제/국가/사회적 이슈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및 조직을 통해 추진 -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방안 검토	
고려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사전연구 등을 통해 시범사업 선정 기준 마련	

3. 제도 홍보/설명

-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홍보 및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운용에 관한 설명회 등 개최
 - 정책공급 주체, 정책수혜 대상, 제도설계 및 운영 관계자 대상으로 제도 홍보 진행
 - 제도수행에 따른 국민 및 전문가 대상 아이디어 공모, 세미나, 제도설명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의 의의 및 가치 확산

〈표 4-19〉 대상별 제도 홍보 방안

구분	내용	비고
정책수혜자인 국민대상	제도의 의의 및 가치에 대한 캠페인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제도 홍보	
정책추진주체	제도운영에 관한 자료집발간/ 설명회 개최 등 진행	
전문가	제도 설계 및 디자인, 운영을 담당할 전문가 및 기관 대상 제도의 가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정책세미나, 포럼 등 개최	
해외/국제	국제적으로 문화적 가치실천 도구로서 문화영향평가 의의/문화평가활용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정책성과 발표 등 통해 국가위상 제고	

참고문헌

- 김효정(2006),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김규원(2004),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김규원(2003),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이종열·박광국·주효진(2004),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 : CIA) 도입을 위한 시론」, 한국정책과학회보, 제 8권 제1호
- 이종열·도운섭·박병일·주효진(2004),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 : CIA)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제8권 제1호
- 심상민(2006), 「문화영향평가와 문화산업공간 개발」, 문화도시문화복지, vol.176
- 정숙영(2006), 「해외사례로 본 문화 영향평가 도입 가능성에 대한 小考」, 문화도시문화복지, vol.176
- 최순화(2006), 「문화지표의 변천과 발전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
- 조현성·서우석(2006), 「문화지표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사연구학회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 p.3~20
- 안인자(2002), 「문화예술 통계자료의 체계적 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13권 제1호
- 유원희(2011), 「문화정책의 변화와 직면문제에 관한 연구」, infoDESIGN, ISSUE31 vol.10
- 김세훈·서순복(201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186-198
- 정광렬(2005), 「문화기본법, 신중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 문화기본법의 의미와 향후과제」, 문화예술 통권 308호, p.10~17
- 김동진(2008), 「우리나라에서의 영향평가」, 보건복지포럼 제 146호, p.43~58
- 김효정(2010), 「문화예술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p.44~51

- 양혜원(2012),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주특별자치도, p.97~137
- 류정아(2012),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9~19
- 이상영(2011), 「건강영향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5~39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년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 장인호(2013),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24권 2호, 미국헌법학회, p.327 ~360
- 정광렬(2004), 「문화기본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5
- 박광국·채경진(2010),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도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20권 제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p.1~22
- 김이랑·심미나·임종인(2013), 「개인정보영향평가 자격기준의 문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유사자격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자격체계와의 유사성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3권 제1호, 한국정보보호학회, p.127~142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2000), 「인구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13~29
- 김남국(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국제정치논집 제50집 1호, p.262~284
- 김세훈(2006), 「문화다양성과 문화권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 김효정(2012), 「문화다양성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유창열(2008), 「재해영향평가제도운영결과, 한국수자원학회지
- 주혜진(2013),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실행 매뉴얼 개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 문화체육관광부(2006), 「문화영향평가지표개발 및 법제화방안」

ABSTRACT

kim-hyojeong

The purpose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first, to support the promotion of the culture friendly policies through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impact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ain businesses and polices on cultural enjoyment and cultural environment of people, second, to set the political stage which could help systematically understand and analyze cultural impacts of the various policies while fulfilling the needs on cultural impacts effectively, and third, establish the cultural rights for all people through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This study seeks effective Cultural Impact Assessment implementation measures through literature and current situation data investigation, professional interviews, and survey of demand.

As a result, this study expects the important role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on developing policies and systems, and proposes various remarks about Cultural Impact Assessment's necessity and methods.

부 록



1.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지

No

『문화영향평가 실행계획 연구』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에서는 2013년 하반기 기본연구과제로 「문화영향평가 실행계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영향평가의 개념 및 제도화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응답해주신 귀중한 의견은 통계작성과 학술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번거로우시겠지만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모든 문항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문의
의
·
회
송
방
법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책임 : 김호정 책임연구원 (☎ 02-2669-9895), (hyojeong@kcti.re.kr)

조사담당 : 남보경 (☎ 02-2669-9864), (mango4224@daum.net)

회송방법 : E-mail (mango4224@daum.net) / Fax 02-2669-9882

문의처 :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금남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12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주소			

3.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필요성을 적극 홍보
- ② 시민 또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참여의욕 고취
- ③ 문화영향평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④ 시범적인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평가 효과 입증
- ⑤ 기타()

4.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어느 대상을 평가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4대 영향평가에 준하는 대상 ②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 ③ 평가 요청이 있을 시
- ④ 타 부처 추진 정책 중 문화적 관점이 요구되는 정책
- ⑤ 기타()

4대영향평가			
구분	대상	시행 시기	개념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 17개 분야 74개	사업 실시 전 및 사업 계획 단계	시행 계획 및 실시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 및 예측,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교통영향평가	도시개발 등 11개 분야, 택지개발 사업 24종 및 공동주택 등의 23종 시설		대규모 교통사업 시행 및 시설의 설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 및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함
인구영향평가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3개 분야 13개 사업		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해 실시, 그 사업이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함
재해영향평가	도시개발 등의 6개 분야의 택지개발사업 등 21종 사업		개발계획 시행 과정에서의 수해요인을 평가 및 분석하고 그 요인을 개발 전 상태 이내로 통제하는 방향으로의 계획을 추진함

5. 문화영향평가의 적당한 시행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계획 및 정책 구상 단계 ② 계획 및 정책 집행 단계
 ③ 계획 및 정책 실시설계 단계 ④ 계획 및 정책 집행
 ⑤ 계획 및 정책 관리
6.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시,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관광부 ②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③ 지방자치단체
 ④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⑤ NGO단체
7. 문화영향평가 시행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의 긍정적인 효과 및 선(善)기능의 확대
 ② 타 영향평가와 중복되지 않는 평가를 지향
 ③ 평가대상 및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측정 가능성
 ④ 평가 과정에서 비용 및 시간 소요의 최소화
 ⑤ 기타()
8. 문화영향평가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평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영향평가의 지침을 작성 후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서 세부 내용 결정
 ②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시행
 ③ 평가 해당 사업체에서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에 평가 의뢰
 ④ 기타()
9.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영향평가 독자적 수행
 ② 타 영향평가와의 연계(☞9-1번 질문)
- 9-1. 타 영향평가와 연계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기본법 등을 포함한 통합기본법 추진
 ② 환경영향평가 등의 타 영향평가제도 내에 문화영향평가 관련 항목 추가
 ③ 기타()

10. 문화영향평가의 다음과 같은 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목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화 기본권 보장	평등 /다양성	문화적 지역적 격차 해소 또는 조장하 지 않는가?						
		문화적 차이와 문화다양성을 저해 또는 진흥하고 있는가? - 특정 집단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가?						
		문화향유/창작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또는 소외되는 집단이 있는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활동을 위한 교육 및 안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가?						
	자유 /자유	문화향유 및 창작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자율권을 저해 또는 보장하는가?						
		문화활동을 위한 적절한 접근 및 교육과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						
	소통 /교류	새로운 문화/트렌드 접촉 및 타 문화 간의 소통/교류 기회를 차단 또는 보장 하고 있는가?						
		문화향유를 위한 경제적 접근성 및 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가?						
문화 정체성 확립	정신문화 /관습	집단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공 동체/지역 의식)을 저해 또는 존중하고 있는가?						
		전통적 관습/통념(예: 가족관계, 충효예 등)/가치관 해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문화유산 /계승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에 저해 또는 보 존을 위한 노력을 내포하고 있는가?						
		전통적인 문화경관을 보존/발전하는데 저 해요소 또는 증진 노력을 내포하고 있는가?						
	상생 /발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저해 또는 진흥하고 있는가?						
		문화 관리에 대한 기록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우리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 는가?						
		문화융합 및 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 발전을 방해 또는 협력하고 있는가?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 에 참여 및 의견 반응이 가능한가?					

- 10-1. 위에 제시된 문화 외에 문화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문화기본법 및 관계법

가. 문화기본법 제정안

문화기본법 제정안(전체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

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 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나. 관계법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p>제 2조(정의) 1항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p>	<p>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p>하 “분석평가” 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교육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3.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p>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p>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p>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p>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p>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법인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p>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p> <p>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p> <p>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p> <p>2.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p> <p>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p> <p>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p>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p>〈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p>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p>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p>보 침해의 가능성</p> <p>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p> <p>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p> <p>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p> <p>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p> <p>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p> <p>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p> <p>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3) 고용영향평가

고용정책기본법(2014.1.21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전)
<p>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제22조(정책의 분석·평가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관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정책 분석·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정책의 분석·평가 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p>

고용정책기본법(2014.1.21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전)
<p>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1></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1></p> <p>⑥ 제5항에 따라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p> <p>⑦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정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p> <p>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p>	<p>· 평가 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책이 고용이나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 및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정책의 분석·평가 실시 여부를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그 실시 여부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양한 정성(定性)적·정량(定量)적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p> <p>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노동 시장에서의 일자리 증감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와 이것이 일자리 증감에 미친 영향 4.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정책 요소의 제시와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해당 정책에 대한 제언(提言) <p>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p> <p>제23조(정책의 분석·평가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정책의 분석·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p>

고용정책기본법(2014.1.21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전)
<p>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1.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민간연구기관 [제목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p>	

4)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p>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기술영향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p>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p>한다. <개정 2011.3.28, 2013.3.23></p> <p>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p> <p>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김 호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남 보 경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발 행 인 박 광 무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3년 12월

발 행 일 2013년 12월

인 쇄 인 크리홍보(주)

ISBN : 978-89-6035-446-3 93300